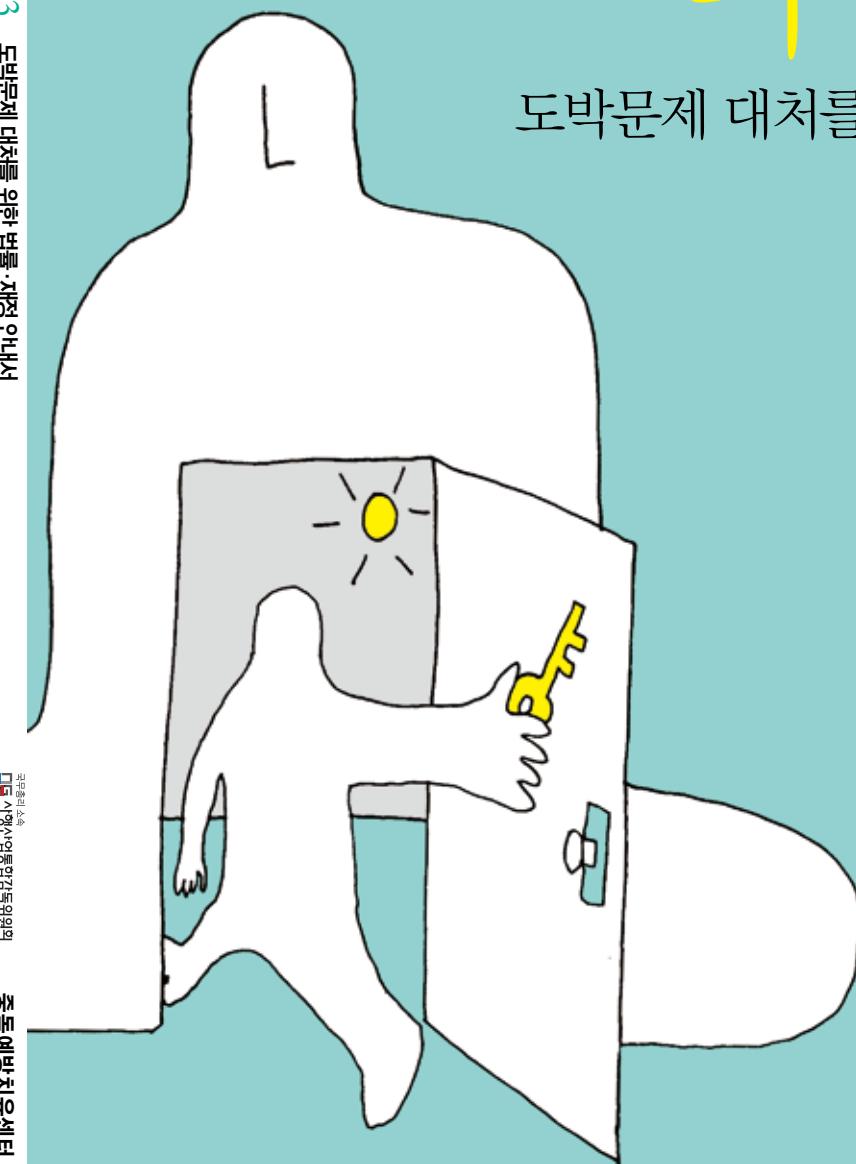


#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 3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 3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국무총리 소속  
중독예방치유센터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전화 080-300-8275 (빨리치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7층

전화 02-3704-0576 팩스 3704-0579

홈페이지 [www.pgcc.go.kr](http://www.pgcc.go.kr) 블로그 [blog.naver.com/goodcare8275](http://blog.naver.com/goodcare8275)

불법 사행행위 신고

사행산업자의 과도한 시행심 우발행위 및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전화 1588-0441 홈페이지 [www.ngcc.go.kr](http://www.ngcc.go.kr)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중독예방치유센터

#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3

##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 일러두기

#### 인용의 원칙

판례는 사건번호를 서술하였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판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책자 준비시점인 2011년 10월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며,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국회·국무회의를 통해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이 책에 법률적인 대응책을 적었지만, 사채업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행위에 여러분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증 독 예 방 치 유 센 터

## 당신의 꿈을 위한 그 길에 함께합니다

많은 도박자와 가족들은 도박과 관련된 법적문제, 재정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져 놀라기도 하고, 돈을 빌렸던 사람들과 소송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또 회복을 결심하고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 다시 도박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도박자와 가족들은 실제 닥치게 될 문제보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몰라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연해서 더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중독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병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법률문제, 재정문제 또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박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박으로 인해 생긴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도 회복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문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률·재정의 문제는 도박자나 가족의 힘만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3 -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는 도박자와 가족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법률·재정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찾아 주셨던 많은 도박자와 가족들이 궁금해한 도박 관련 법률문제와 재정문제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사례를 정리하여 범주를

나누고, 관련 법률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는 과정을 거치고, 또 이 내용이 법률적 오해가 없는지 전문가 감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책은 도박자와 가족의 경험에서 나온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문제가 책의 사례와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례는 책에서 서술한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판단은 증거를 통해 결정되므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와 진행과정의 변수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문제의 해결 및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5장에서는 재정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재정문제 또한 신용, 명의이전 등의 법률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법률·재정문제 대처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자료 수집을 도와주신 정우진 님, 경험적 의견을 주신 이주영 선생님, 원고작성을 도와주신 이광철 변호사님, 내용에 조언을 해주신 장창국 판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1장

## 도박? 법대로 합시다!

1. 합법과 불법 사이 \_010
2. 불법도박을 하면 감옥에 가나요? \_012

2장

## 채무의 수렁에 빠졌다면?

1. 도박자금은 빌려도 빌린 게 아니다 \_018
2. 도박 빚이라도 갚았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 \_021
3. 각서·차용증보다 법이 먼저 \_022
4. 사채 이자에도 한계는 있다 \_023

3장

## 가족의 재산, 법으로 지켜요

1.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_030
2. 나 몰래 받은 대출, 가족이니까 갚아야 할까? \_032
3. 부부 사이에도 네 집 내 집 따질 수 있다 \_033
4. 지갑 속 신용카드도 다시 보자! \_034
5. 채무 회피용 편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 \_035

4장

## 채무를 못 갚아도 살 길은 있다

1.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불법채권추심 \_038
2.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살아남기 \_041
3. 내 재산 옮아매는 기압류와 가처분 \_043
4. 내 재산 강제로 처분하는 경매 \_046
5. 내 현금 가져가는 채권 강제집행 \_049

5장

## 회복의 첫걸음, 채무 스스로 감당하기

1. 당당하게, 자신 있게, 채무와 정면승부! \_054
2. 채무도 해결하고, 도박 중독도 치료하고 \_056
3. 채무조정, 잘못하면 독! 잘하면 약! \_058

6장

## 모두를 지키는 도박 채무 예방법

1. 혼들리는 마음, 신용카드 신규발급 정지로 잡아요 \_070
2. 최후의 선택, 한정치산자 선고 \_072

7장

## 도박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상식

1. 국가가 죄를 묻다, 형사사건 \_076
2. 가족 공동체에서 남으로, 이혼 \_081
3. 가족이어서 더 아픈, 가정폭력 \_086
4. 독이 든 사과? 도박자의 상속 \_087
5. 갚는 게 상책, 세금체납 \_090

부록

1. 관련 법조항 및 판례 \_092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법률문제 \_098
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채무조정 및 재정문제 \_100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도박중독 상담기관 \_100
5. 참고도서 및 홈페이지 \_101

# 도박? 법대로 합시다!

도박이란 무엇일까요? 도박으로 인한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도박자와 가족이라면, 사전적 정의보다는 법률적 정의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재미로 하는 내기와 불법도박을 구별하는 법적 정의를 비롯하여 도박자가 받게 되는 처벌과 불법도박 신고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불법도박을 하면 감옥에 가나요?



# 합법과 불법 사이

**김대박 부인**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생활비 찾으려고 봤더니 월급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썼던데. 당신, 도박한 거 아니에요?

**김대박** 친구들하고 재미 삼아 카드를 했는데, 운이 나빠서 좀 잃었어. 열 받아서 판돈 올리고 여러 번 했는데 다 잃었지 뭐야. 금방 다시 찾아올 거야.

**김대박 부인** 당신 지금 범법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은 불법이라고요.

**김대박** 뭐? 내가 사기라도 쳤어? 내 돈 걸고 스트레스 좀 푸는 게 왜 범법행위야?

흔히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고 더 많은 돈이나 재물을 따기 위해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부인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재산 손실로 이어져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박이 합법화된 외국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해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 재미 삼아 즐기는 게임, 일시오락

스트레스를 풀 겸 친목도 도모할 겸 어쩌다 한 번씩 적은 돈을 걸고 지인들과 하는 게임, 즉 ‘일시오락’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시간, 장소, 함께한 사람들, 걸린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84누692 판결](#)). 김대박 씨는 자신이 스트레스 좀 푸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정황을 보면 일시오락은 아닌 것 같군요. 하룻밤에 한 달 월급이 넘는 돈을 썼다면 불법도박이라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김대박 씨,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불법도박이라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일시오락 외에 다른 예외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볼까요?

### 도박의 종류

이용방식 구분	종류
놀이도구	화투, 장기, 바둑, 골퍼, 주사위, 트럼프, 체스, 마작 등
도박기계	카지노(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등), 경품, 오락, 각종 전자오락(바다이야기, 스크린 경마, 파친코 등)
추첨 방식	복권, 로또
스포츠경기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
동물 싸움	소싸움, 투견, 투계 등

## 허가된 도박, 합법 사행산업

법으로 정해 놓은 합법 사행사업장에서 내기에 참여하는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조세 및 기금 마련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카지노, 경마 등 일부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사행산업의 종류가 아닌 운영주체로 구별하죠. 예를 들어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외에는 불법이랍니다. 실제로 합법화된 것처럼 가장하여 불법도박을 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가벼운 경품을 걸어 놓고, 나중에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피해 사례가 자주 생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 운영주체는 강원랜드(카지노), 한국마사회  
(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위원회(복권), 한국우사회  
(소싸움)뿐이니 기억해 두세요.

이밖에도 사기도박단에 걸려 도박에 참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만, 사기도박단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판례 사기도박은 도박일까? 사기일까?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포함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도박과 달리 일방적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기도박은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도박임을 감추기 위해 일정 기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더라도, 사기도박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도박을 권유한 것에서부터 이미 사기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0도9330 판결](#)).

## 불법도박을 하면 감옥에 가나요?

**김대박 부인** 남편이 다니는 도박장을 신고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남편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받게 될 처벌이 걱정돼요. 제가 신고하면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나회복** 전에 가족들이 제가 도박하는 것을 막아 보려고 도박장을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초범이라 5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왔죠.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도박한 사람보다는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제 경우고, 도박 종류에 따라 관할 부서가 다르니 처벌 정도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 도박은 계좌주적을 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김대박 부인** 그렇군요. 그럼 신고하는 방법도 도박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요?

불법도박은 종류에 따라 세 개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신고하셔야 신속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사설도박장은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사례를 보면 주위에서 도박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해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PC방에서 경품을 주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 단속되어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베팅성 게임은 **불법환전신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이 밖에 합법 사행산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사행행위는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관별로 도박의 특성에 맞춰 신고 요령도 조금씩 다르니, 미리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즉결심판부터 징역형까지

나회복 씨가 말씀하신 처벌 내용도 좀 더 정확히 알아볼까요? 우리 법에서는 도박죄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합니다. 하지만 상습도박자와 도박장 개장자는 처벌이 더 무거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46조](#)). 실제 처벌 정도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더 큰데요. 경찰이 경미한 도박죄로 판단하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2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과료형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그보다 많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 \* **과료**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입니다. 5만 원 이상으로 과해지는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죠. 법령의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다르다는 것, 알아 두세요.

## 불법도박 종류별 신고기관

### 1.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

#### 신고대상

불법 경마·경륜·경정(온라인 포함)·카지노 운영 및 유사 복권·체육진흥투표권 발매 행위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

#### 신고내용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  
육하원칙에 의거한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  
\*증거: 사진, 비디오, 오디오, 입출금 증명서 등

#### 연락처 | 홈페이지

1588-0441 | [www.ngcc.go.kr](http://www.ngcc.go.kr)

### 2. 불법환전신고센터

#### 신고대상

온라인 베팅성 게임(고스톱게임류, 포커게임류 등)과 관련하여 게임법 제3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하는 ‘게임머니 환전, 알선 및 재매입 사이트’

\*사이트 없이 활동하는 환전업자의 영업행위와 외국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신고 불가

#### 연락처 | 홈페이지

02-3454-1087 | [shingo.or.kr](http://shingo.or.kr)

### 3. 경찰청

#### 신고대상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설도박장, 오락зал

#### 연락처 | 홈페이지

1566-0112(사이버경찰청) | [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 4. 게임물등급위원회

#### 신고대상

불법게임물

#### 연락처 | 홈페이지

02-2012-7812 | [www.grb.or.kr](http://www.grb.or.kr)

### 5. 사행산업사업자 운영 신고센터

#### 신고내용

사설경마, 사설경륜·경정, 사설스포츠베팅 등 불법사행행위

#### 연락처 | 홈페이지

한국마사회(사설경마) 080-8282-112(수신자부담) | [www.kra.co.kr](http://www.kra.co.kr)  
국민체육진흥공단(사설 경륜·경정) 02)2067-5888~9 | [www.kspo.or.kr](http://www.kspo.or.kr)  
(주)스포츠토토(사설스포츠베팅) 1588-4900 | [www.sportstoto.co.kr](http://www.sportstoto.co.kr)

#### 민사와 형사

도박문제에 관한 법률은 민사와 형사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도박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어기거나, 손해를 입히는 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은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하면서 재판이 시작되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결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개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증거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라고 규정한 것을 행했을 때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수사기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사기,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김대박 씨가 렌트카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면 이것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불법행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도박문제의 경우 민사와 형사가 매우 복잡하게 얹히기도 합니다.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사기로 돈을 빌린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고소해 사기가 입증되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받는 처벌과는 별개로 상대방은 빌린 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민사	형사
개입 정도	국가(법원)의 소극적 개입	국가(수사기관: 검찰, 경찰)의 적극적 개입
절차 시작	소장 제출로 시작	고소, 고발로 시작
집행	개인이 집행관에게 위탁	검사가 구속, 벌금 징수

# 채무의 수령에 빠졌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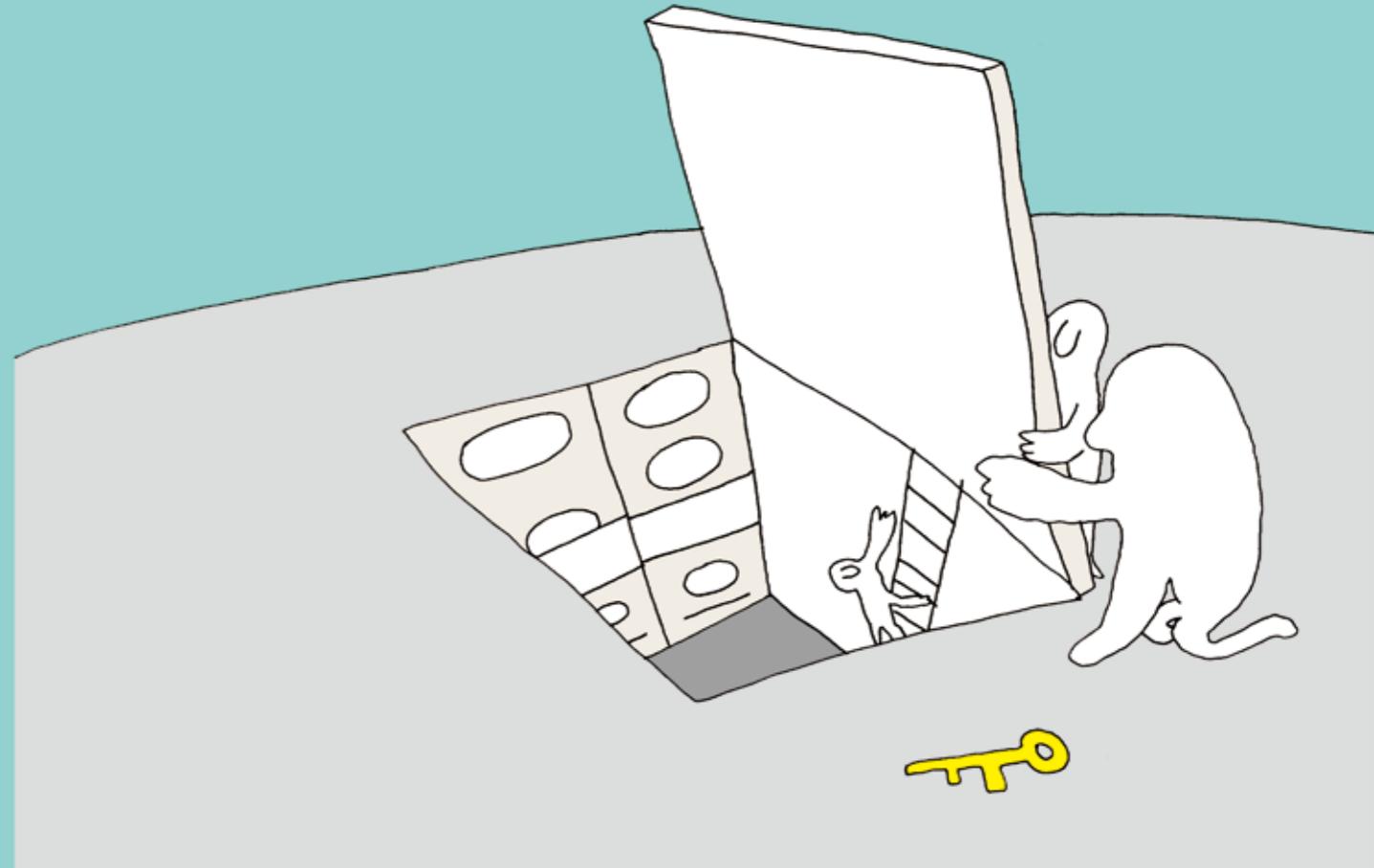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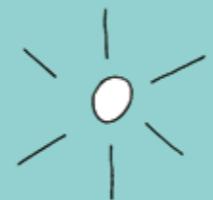
도박중독은 도박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고통을 안겨 줍니다.  
도박에 빠져 이성을 잃고 짚어진 채무는 도박에서 빠져나온 후에도  
도박자와 가족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다시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장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적 대응 방법을 유형별로 살펴봅니다.

도박자금은 빌려도 빌린 게 아니다

도박 빚이라도 갚았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

각서·차용증보다 법이 먼저

사채 이자에도 한계는 있다



# 도박자금은 빌려도 빌린 게 아니다

**박일수** 나회복! 겨우 찾았어. 설마 나 피해 다니는 건 아니지?

**나회복** 아… 그런 건 아니고… 나 손 씻어서 이제 도박장 안 나가요.

**박일수** 그래? 뭐 그건 그렇고. 나한테 꾼 돈은 갚아야지. 이자만 벌써 80만 원이야.

**나회복** 네? 빌린 돈이 100만 원인데 무슨 이자가… 그 돈도 그날 다 잃는 거 보셨잖아요.

**박일수**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 주기로 한 거 잊었어? 그리고 잊었던 땠든 빌린 건 빌린 거지.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 나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야!

**나회복** 정말 너무하네요. 알아보니 도박하라고 빌려 준 돈은 안 갚아도 된다던데.

**박일수** 아니, 누가 그래? 빌려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제가, 아니 법이 그랬습니다. 도박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 주었다면 무효라고 요([민법 제103조, 대법원 72다2249 판결](#)). 도박을 하면서 함께 도박하는 사람이나 도박장에 상주하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 주는 행위는 법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사의 글



## 있는 척, 아닌 척 속이면 유효

이쯤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갚을 필요가 없다면 왜 도박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이 생길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고, 상대방이 도박자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채무관계라는 것이죠. 돈을 빌려 주고도 받지 못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재산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금방 갚을 것처럼 속이고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지노에서 만난 사람에게 금방 갚겠다며 도박할 돈을 빌린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벼운 형벌을 받기 위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까지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죠. 따라서 도박채무에 관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속이지 않고 돈을 빌려야 하고,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도박자금이라는 것을 숨기고 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야 합니다.

## 도박채무 소송,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자

빌렸지만 갚지 않아도 되는 돈. 당연히 빌려 준 쪽에서는 받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특히 사채업자들의 경우 이런 방면으로 도가 튼 사람들이니 두 가지 단서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하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꼼짝없이 소송에서 져 도박채무를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법적으로 무효가 확실한 도박채무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송 전이라도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는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사채업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때 내용증명에 답을 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없다면 아예 내용증명에 답하지 마세요. 만약 보낸다면 ‘도박채무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만 적으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문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채업자가 제기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법원에서 동봉한 안내장을 확인한 후 가능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소장인 경우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인 경우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여러분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채업자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나 이의신청서에는 도박채무라는 말과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빌렸다는 것을 자세히 적는 게 좋습니다. 만약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면 번거롭더라도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법원에 늦게 도착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셋째, 소송이 시작되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런 소송에서 사채업자는 도박자금으로 쓰는지 모르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돈을 빌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도박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수사기록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판사가 합의를 권유한다면 그 조건에 따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제시하는 조정 금액은 증거와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결과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째, 사채업자가 갑자기 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 등을 신청한다면 우선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도박자가 행방불명일 때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에 참여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 등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4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을 경매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항소장이나 집행정지신청서에 도박채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유리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을 받거나,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박 빚이라도 갚았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



**김대박 부인** 월급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공과금 내야하는데….

**김대박** 아~ 빚 갚았어. 전에 도박장에서 박일수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독촉도 심하고 이자도 자꾸 불어나서.

**김대박 부인** 뭐예요? 그래서 그 비싼 이자까지 다 쳐서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 돈 도박장에서 빌린 거잖아요.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법적으로 무효래요.

**김대박** 아니, 그런 법이 있었어? 그럼, 법이 그러니 다시 돌려달라고 해볼까?

| \* [공시송달](#) 소장 등을 보낼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직접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수 없을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소송 제기 사실을 게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소용없을 겁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법률은 빌린 것은 물론이고 갚은 것도 무효로 하기 때문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근저당권**<sup>\*\*</sup> 설정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효화할 수 있지만, **양도담보**<sup>\*\*\*</sup>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돈이나 부동산을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명백하게 더 큰 경우에는 되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민법 제746조, 대법원 95다49530·49547 판결).



## 각서·차용증보다 법이 먼저

**김대박** 아, 한 판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네. 저, 돈 좀 빌려 주세요. 금방 따서 갚을 수 있어요.

**박일수** 지난번에 빌려 간 것도 안 갚았잖아.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있어야지. 아니면 신체포기각서라도 쓰든가. 장기라도 팔아서 갚겠다면 담보로 처줄게.

그런 각서는 안 쓰는 게 피차 좋을 겁니다. 돈을 받고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사채업자가 장기매매를 중개하거나 장기를 팔라고 시키는 것도 불법입니다. 직접 시키지 않았더라도, 장기매매를 방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45조). 당연히 돈을 빌리기 위해 신체를 담보로 삼는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죠(민법 제103조). 사채업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 신체포기각서로 위협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강요죄나 감금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경찰에 고소하고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형법 제276조·제324조).



## 협박과 강요를 입증하는 건 채무자 책임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각서나 차용증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법적인 효력도 지니게 되죠. 물론 협박과 강요로 작성된 각서나 차용증은 효력이 없지만, 내용 자체가 불법인 경우와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채업자의 강요로 금액을 부풀려 쓴 각서나 차용증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도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당연히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테니, 도박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서나 차용증에 적힌 돈을 갚아야 합니다.

## 사채 이자에도 한계는 있다

**나희복** 이봐, 김대박.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김대박** 한 달 전에 돈이 급해서 사채업자한테 100만 원을 빌렸거든. 그런데 갚을 생각을 하니 막막해서 그래.

**나희복** 돈이 궁하기야 하겠지만, 마음잡고 일하면 100만 원이야 못 갚으려고.

**김대박** 그게..., 이자를 10일에 10만 원씩 내기로 했거든. 좀 억울하긴 한데, 급해서 그만.

**나희복** 말도 안 돼. 내 들어 보니 사채업자라도 법에서 정한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네. 나도 전에 한창 도박에 빠져 있을 때 박일수한테 월 5부 이자로 빌린 1,000만 원 때문에 알아보려던 참이니 같이 가세.

| **\*\* 근저당권** 저당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혹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지만, 일반적인 저당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저당권은 빚이 늘거나 줄어들면 계속 다시 설정을 해야 하지만, 근저당권은 빚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저당을 잡을 수 있죠. 즉,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담보에 대해 얼마까지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정한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에 표기됩니다.

**\*\*\* 양도담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기 전까지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못 갚으면 그대로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지만, 돈을 갚으면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두 분 모두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셨군요. 다행인 것은 나회복 씨가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지나친 고금리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이자, 연 39%까지만 내세요

현재, 법적으로 등록업체는 연 39%,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등록업체더라도 김대박 씨는 1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년에 39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다만 김대박 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처럼 연 100% 이상의 초고금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협박·폭행 등 불법 **추심\*\*\*\***을 행할 위험도 매우 높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채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등록증을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법률에 정한 것보다 많은 이자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법정이자 이상을 강요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서에 고발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달라요

나회복 씨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고, 이를 계산하려면 계약 당시의 법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나회복 씨의 계약서를 보니 돈을 빌린 정확한 날짜가 2005년 6월 30일이네요. 박일수 씨 개인에게 빌렸으니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의 기준을 참고해 차근차근 계산해 볼까요? 우선 2005년 6월 30일~2007년 6월 29일까지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66%입니다. 5부 이자는 연 60%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은 계약한 대로 연 60%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2007년 6월 30부터는

법정 최고이자가 연 30%로 적용되므로, 연 30%의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갚을 이자의 구체적인 액수는 '빌린 돈 × 빌린 일수/365 × 연이율' 식으로 계산하세요.

### 등록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이자율

계약 시점	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
1998.01.13 ~ 2002.10.26	별도 최고 이자율은 없으나 민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단, 2008.03.22부터 지급되는 이자는 연 49%로 제한)
2002.10.27 ~ 2007.10.03	연 66%(단, 2008.03.22부터 지급되는 이자는 연 49%로 제한)
2007.10.04 ~ 2010.07.20	연 49%
2010.07.21 ~ 2011.06.26	연 44%
2011.06.27 ~	연 39%

###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상한 이자율 규제

계약 시점	민사상 효력	형사처벌 기준
1998.01.13 ~ 2002.10.26	법정 상한 이자율 없음 (2008.03.22~2009.01.20 기간 중 연 49%, 2009.01.21부터는 연 30% 이상 이자를 받는 경우)	법정 상한 이자율 없음 (2008.03.22~2009.01.20 기간 중 연 49%, 2009.01.21부터는 연 30% 이상 이자를 받는 경우)
2002.10.27 ~ 2007.06.29	연 66%(2007.06.30 이후 이자는 연 30%)	연 66%(2008.03.22~2009.01.20 기간 중 연 49%, 2009.01.21부터는 연 30% 이상 이자를 받는 경우)
2007.06.30 ~ 2007.10.03	연 30%	연 66%(2008.03.22~2009.01.20 기간 중 연 49%, 2009.01.21부터는 연 30% 이상 이자를 받는 경우)
2007.10.04 ~ 2009.01.20	연 30%	연 49%
2009.01.21 ~	연 30%	연 30%

| \*\*\*\* 추심 빌려 준 돈을 받아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자 외에 돈 요구, 확실히 따집시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는 법을 무시한 초고금리 이자 말고도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각종 명목으로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죠. 이런 요구는 모두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명목으로 돈을 이미 지급했다면, 그 돈은 이자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사채업자가 여러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 빌려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간혹 대출 중개인이라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등록 업자가 대부 중개를 하거나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형사 고소하여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부대비용으로 이자가 아니며,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금융 피해 예방법

#### 1. 등록 대부업체와 거래하세요

등록된 대부업체, 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을 사칭하는 대출시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는 등록 지방자치단체 등 필수기재사항을 광고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광고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거나, 금리 등 주요사항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하세요.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부업 광고를 게재한 경우 신고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에 상담하시면 수사기관(경찰서) 및 자자체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대부업체 광고 필수기재사항: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환산 이자율 포함) 및 연체이자율, 기타 부대비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 2.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고, 계좌 거래·영수증 수령 등 상환의 증거를 보관하세요

증빙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불법 사채업자가 다시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영수증,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상환 완료 후 채무자가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채권자가 보관하는 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원본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법 제6조제5항**에 의한 대부계약서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대부업자는 그 반환요구서와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사본'을 보관하면 됩니다.

#### 3. 대부업자 연락두절로 변제가 곤란하다면,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해 두세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제기일이 지나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4.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를 주지 마세요

대부중개업자가 서류처리비, 전산처리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상조·보험가입 등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미 지급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하시면, 피해구제를 도와드립니다.

#### 5. 대출사기를 조심하세요

생활정보지 광고, 불법스팸문자 등을 통해 대부업체, 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을 사칭하는 사기업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대부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세요.

대출사기에 속아 통장이나 휴대전화번호를 보냈다면 즉시 거래은행 및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통장 지급정지와 휴대전화 정지를 신청한 후,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통장 및 휴대전화를 해지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후에는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최선의 방법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불법적인 대출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등록대부업체 조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s119.fss.or.kr) |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

####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 조회

대출모집인(개인, 법인) 성명(상호),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

#### 서민금융 관련 종합상담 및 불법업체 신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 | s119.fss.or.kr)

출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3장

# 가족의 재산, 법으로 지켜요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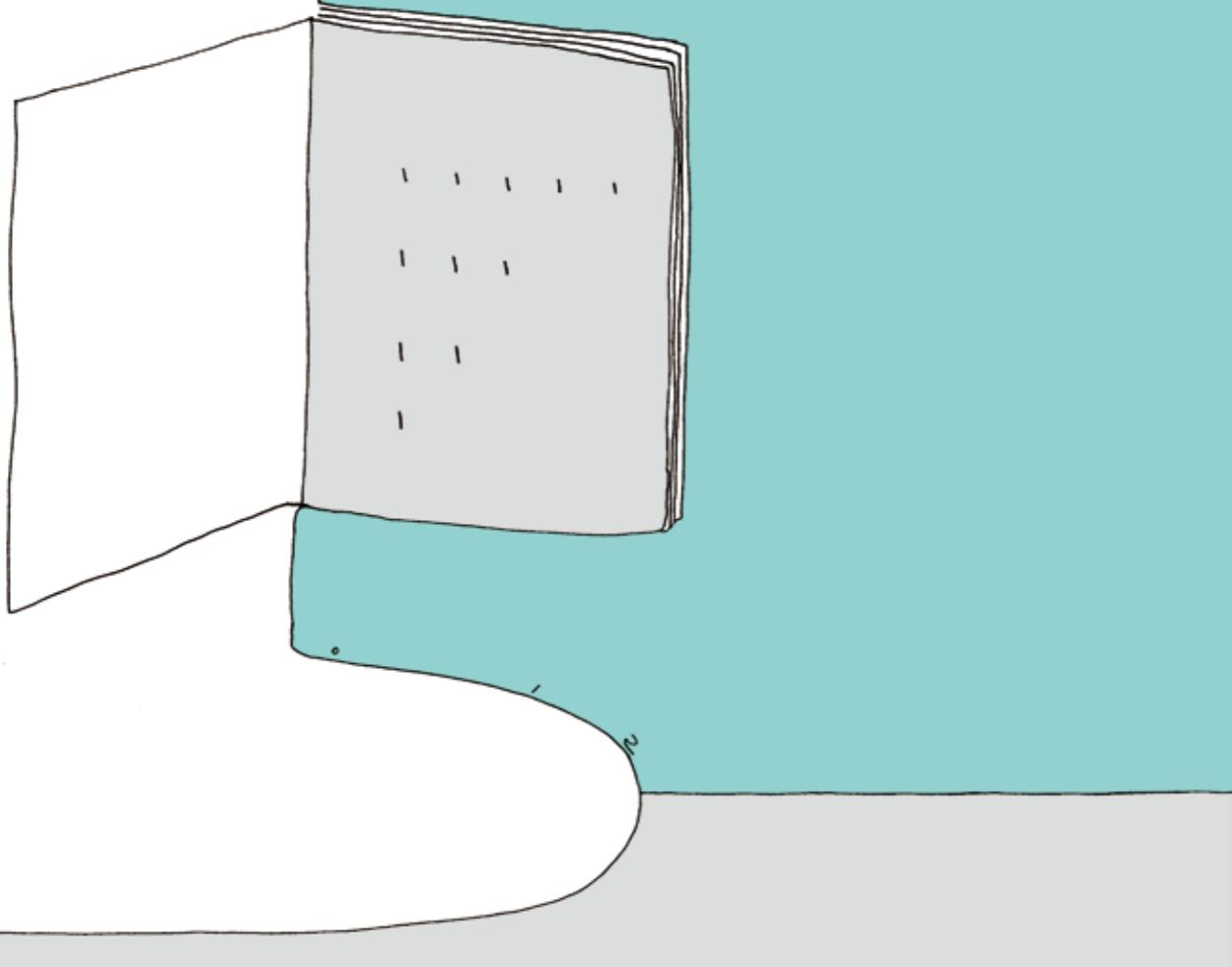
나 몰래 받은 대출, 가족이니까 갚아야 할까?

부부 사이에도 네 집 내 집 따질 수 있다

지갑 속 신용카드도 다시 보자

채무 회피용 편법은 언 밭에 오줌 누기

가족이나 지인은 도박자의 채무에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와 상관없이 관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족 전체가 도박자와 함께 도박빚의 수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든 채무 한계를 정하고 개인정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스스로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박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된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김대박 아내** 아버님, 그 사람이 또 도박장에 드나드는 것 같아요.

**김대박 아버지** 뭐야? 아니,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읊며 매달려서 사채업자한테 내 집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줬는데. 그럼 빚은 하나도 못 갚은 거냐?

**김대박 아내** 네. 열심히 일해서 갚아도 모자랄 판에 다시 도박에 빠졌으니, 2억 원을 어떻게 다 갚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아버님 집은 지켜야 할 텐데.

**김대박 아버지** 그러게 말이다. 그럼, 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1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빚은 2억 원이니. 얼마를 갚아야 집이 안 넘어가는 거지?

김대박 씨 아버님처럼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족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당 못할 빚 때문에 더욱 도박에 빠지는 것 같아 드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따라서 도박자의 채무는 가능하면 도박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엉질러진 물이라면 후회는 잠시 미뤄 두고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해야겠죠? 그럼, 김대박 씨 아버님의 경우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담보를 제공할 때는 책임 범위를 확실하게

김대박 씨 아버님 말씀대로 근저당권이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 금액 안에서만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1억 원만 갚으면 집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다만,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작성하는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채업자가 채권액 란이 비어 있는 서류나 2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 또는 아버님을 김대박 씨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서류를 준비해 놓고 서명을 요구할 위험이 있거든요. 만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런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아들 빚 전부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에게 1억 원만 책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죠.

## 보증계약서 서명은 신중 또 신중하게

보증을 서는 것은 때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도박자의 채무에 보증을 설 때는 채무를 대신 떠안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법률이죠. 또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보증은 3년만 유효하고, 갱신도 3년씩만 가능합니다.

| \* **기명날인** 본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명날인을 하는 것은 법률행위를 한다는 의미이므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나 몰래 받은 대출, 가족이니까 갚아야 할까?

**박일수** 내 돈, 언제 갚을 거요? 당장 못 갚으면 이자라도 내든가.

**김대박 부인** 뭐라고요? 남편이 또 돈을 빌린 모양인데, 저한테 이러지 말고 그 사람한테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박 중독자니까 앞으로는 돈 안 빌려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박일수** 나도 김대박 그 친구한테는 돈 안 빌려 줘요. 아줌마니까 빌려 줬지. 여기, 대출서류도 가져왔으니 보라고. 아줌마 도장 찍혀 있잖아요.

**김대박 부인**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난 모르는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도박자가 무단으로 가족 명의의 대출서류를 작성한 모양이군요. 이처럼 도박자가 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대출자나 보증인란에 가족의 이름을 적은 경우,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발행인이나 배서인란에 가족의 이름을 적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은 돈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도박자는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되죠. 원칙적으로는 이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법은 명의를 도용당한 가족뿐 아니라 채권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글

## 내 명의는 내가 지킨다!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묵인하거나 채권자와 이자를 협상하는 등 갚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채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박자가 가족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가 도박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가족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명의 무단 도용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조된 서류이므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의 소송에 대비해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도박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도 네 집 내 집 따질 수 있다

**집 매수자** 얼마 전에 이 집 산 사람인데요. 남편이 한 번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둘러봐도 되죠?

**김대박 부인** 이 집을 사다니요? 이건 저희 집인데요.

**집 매수자** 네? 남편 분하고 매매계약 하면서 전세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셔서 전세계약까지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김대박 부인** 남편이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돼 있는 제 집인데, 남편이 어떻게….

부부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는 달리 일상의 가사와 관련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봅니다([민법 제827조](#)). 예를 들어 남편이 장기간 외국이나 지방에서 지내면서 살림을 부인에게 맡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인 명의의 집을 처분했다면, 일상의 가사를 넘어서는 것이니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억울한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서 매수인의 고의나 과실을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변호사의 글

##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책임질 일

부부가 아니라도 부동산 매매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본인 소유의 땅을 대신 팔아 달라고 대리권을 주는 경우 등이죠([민법 제125조](#)). 그런데 아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팔아 달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은 땅을 팔아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평 중 100평만 팔아 달라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줬는데 아들이 땅을 다 팔아 버렸다면, 대리권을 주지 않은 100평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됐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땅을 산 상대방은 아버지가 대리권을 준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민법 제126조](#)). 즉, 상대방이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이 없는데도 아들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민법 제129조](#)).

# 지갑 속 신용카드도 다시 보자!

김대박 부인 아니, 이게 뭐야~ 여보! 당신 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았어요?

김대박 응? 아, 그렇게 됐어. 급한데 마침 카드가 보이길래. 그려고 잘 좀 쟁기지~

김대박 부인 뭐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게 몇 번째예요? 카드사도 너무하네.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않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거기 카드사죠? 제 남편이 저 몰래 현금서비스를 받았어요. 이런 건 카드사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본인 확인을 하셨어야죠. 네? 카드사는 책임이 없다고요?

안타깝지만, 가족이 도박자에게 직접 신용카드를 건네준 게 아니라도 부정사용된 금액을 카드사에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모르게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한 경우에도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빌린 돈이 생활비로 쓰인 경우에는 부인 역시 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민법 제832조](#)). 따라서 신용카드는 늘 몸에 지니고 철저히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도록 카드사에 SMS신청을 하는 것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개인정보 알아도 못 쓰게 하는 방법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족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심각하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도박자가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할까 염려된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교환망(FINES)에 등록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도박자가 가족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가족은 카드사에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채무 회피용 편법은 언발에 오줌 누기

김대박 도박하면서 진 빚이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고, 이자만 자꾸 늘어나 걱정이야. 이러다 집까지 날리면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볼지….

나회복 어쩌겠나, 열심히 노력해서 갚는 수밖에.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하고.

김대박 그래서 말인데, 서류상 내가 자네한테 집을 판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쓰면 집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나회복 글쎄, 채권자들이 밝혀내 소송을 제기하면 더 악화되는 게 아닐까?

김대박 그렇지? 괜히 자네한테까지 피해를 줄 순 없으니, 집사람 앞으로 명의를 옮겨 볼까?

나회복 너무 급하게 생각했다 낭패 보지 말고 잘 알아봐. 그래도 되는 건지.

심정은 이해하지만, 나회복 씨 말씀이 맞습니다. 당장은 문제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후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우선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거짓 매매계약을 한다면 상대방도 그냥 당하진 않을 겁니다.



## 눈앞에 빚 피하려다 돈 잃고 처벌까지?

거짓 매매계약을 한 것이 드러나면 채권자는 그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제407조](#)).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부인 명의로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등기를 했을 때 부동산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도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이니 이런 편법은 아예 시도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 \*\*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 또는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태의 발생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일종의 위험범입니다.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불법채권추심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살아남기

내 재산 옮아매는 가압류와 가치분

내 재산 강제로 처분하는 경매

내 현금 가져가는 채권 강제집행

4장

# 채무를 못 갚아도 살길은 있다

도박으로 빚을 지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갚지 못한 채무가 쌓이면 신용거래가 정지되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독촉 등 심적으로 괴로운 일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차분한 마음으로 방법을 모색하면 살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법적인 대처방법을 안내합니다.

#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불법채권추심

**박일수** 김대박, 직장으로 찾아가서 망신을 줘야 정신을 차리겠어? 돈을 뺏으면 빨리 갚아야지. 하루 줄 테니 제대로 입금시켜! 안 그러면 회사로 찾아가서 니가 어떤 인간인지 다 끼발릴 테니까.

**김대박** 정말 왜 이러세요, 직장이라도 열심히 다녀야 돈을 갚죠. 밤 낮 안 가리고 전화해 욕을 하고, 직장까지 찾아온다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꼭 갚을게요.

**박일수** 직장 찾아가는 게 싫어? 그럼 네 가족들한테 가볼까? 그게 빠를 수도 있겠네.

**김대박** 돈을 끈 건 전데 왜 가족한테 찾아간다는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법대로 하겠어요!

**박일수** 무슨 법! 돈을 빌리고 안 갚는데, 갚으라고 말도 못해? 진짜 법대로 해볼까?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하지만 도를 넘어선 협박과 욕설까지 감당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심인은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에 전화를 해 채무 상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욕설,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글

## 돈 못 갚은 사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돈을 빌린 사람도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삶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김대박 씨가 추심원에 항의하신 건 합당한 행동이죠. 돈 갚으라는 독촉만으로도 힘든데, 과도한 협박성 독촉을 받으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불법추심에 당하고만 있다가 단호한 대처를 통해 벗어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돈을 빌렸으니 할 말이 없지'라는 마음보다 '나도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법추심을 계속하시면 대부업협회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항의하세요. 그리고 불법추심 내용을 녹음하거나 폭행 등 위협적인 행동을 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사채업자를 만날 때는 친구나 이웃 등 중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경찰서(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추심행위는 정도에 따라 불법추심과 부당추심으로 구분되며 각각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불법추심행위

불법추심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 사용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 9시~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침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위해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공포감·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

| \* 위계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상사가 아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력 상대를 압도할 만한 강력함 또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위계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행동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5. 금전을 빌려서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단,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채권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으로 이용
8.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9.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

#### **부당추심행위**

**부당추심행위를 한 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 교부를 거부  
**\*채무확인서 교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만 원 이내에서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행위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통지가 필요 없다고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는 서면통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경우 등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함**
3.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
4.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 진행 중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5.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음
6. 채권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7. 채권추심 관련 거짓 표시
8.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9. 민사상·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10.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임**
1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1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13.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시키는 행위
14.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채권추심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채권추심금지명령'이 있으면 회생 인가 결정 이전에도 추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엽서를 이용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16.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17.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 **도움이 되는 기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사금융피해 상담: 국번 없이 1332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민원상담센터: 02-3487-5800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센터: 02-3482-1708 | [www.resu.klac.or.kr/resu](http://www.resu.klac.or.kr/resu)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살아남기**

**김대복:** 자네 전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적 있다고 했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는 서류를 받았어.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나희복:**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대출도 더 어려워지고, 금융계나 회계 관련 업종은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네. 나는 그쪽 일을 안 해서 별 상관없었지만. 신용카드도 정지되고 금융거래도 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은 걱정되겠지만 충분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힘 내. 막상 겪어 보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걸세.

| \*\*\* 전자문서 여기서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정의된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즉,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입니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 기한의 이익이 상실 민법 제388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담보가 줄거나 없어졌을 때, 채무자가 이미 약속한 담보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곧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대박 씨처럼 채무불이행자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감당하면, 이를 피하겠다고 도박의 늪에 더욱 심하게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명칭부터 알아봅시다. 관련 법이 바뀌면서 이전의 신용불량자를 칭하는 용어가 채무불이행자로 바뀐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한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을 통해 공유될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치됩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공개되는 셈이니, 신용이 필요한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워지죠.



## 직접적 제재 아닌 간접적 압박

채무불이행자 등록제도는 채무를 갚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을 받은 사실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기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등록되어 다른 신용정보와 함께 개인의 신용 판단에 활용되죠.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은 물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등록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집중되는 공공기록정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제재나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는 것뿐이죠. 하지만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신용카드 사용, 대출 등 신용거래가 제한되니, 돈을 빌린 사람은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 신용거래를 원한다면 신용을 회복하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일반 금융기관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니 도박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장기적인 회복의 과정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다면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해제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채무를 갚으면 언제든 해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게 확인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 말소 통지서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발송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접수일 다음 날 해제 및 삭제 처리합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등록만큼은 아니지만, 잊은 연체 기록도 신용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만 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일 경우와 소액연체가 2건 이상 누적될 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도 판단정보에 등록이 되어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신용정보는 연체를 갚는 즉시 해제되어 다시 신용거래를 할 수 있지만, 신용정보의 삭제는 1년 내에 연체기간만큼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신용정보관리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재산 옮아매는 가압류와 가처분

**김대박 부인** 여보, 웬 사람들이 집안에 온통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김대박** 이게 다 뭐야? 어디서 온 거래?

**김대박 부인** 박일수라는 사람이 가압류하는 거라던데, 그럼 경매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김대박** 큰일이네. 그 사람한테 갚을 돈이 꽤 되는데… 보통 아닌 사채업자라 설 불리 찾아갔다가는 더 당할 것 같고, 어디 법률상담 받을 데 없는지 알아볼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가재도구 등에 집행관이 딱지를 붙이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성급하게 채권자와 협상하다가는 불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거나 유료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받고 대처해도 늦지 않습니다.



## 가압류, 경매 전 준비작업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집에서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하고 하나하나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죠. 가압류는 도박 관련 채권자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나 가치분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1주일 안에 신속하게 진행되죠. 김대박 씨네 물건에 붙어 있는 빨간 딱지는 가압류 딱지인데요. 이렇게 TV, 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 물건을 가압류하는 것을 유체동산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밖에 가압류 대상으로는 부동산과 채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는 전세금, 은행예금, 주식, 약속어음 등을 대상으로 하죠(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 본인 소유만 가압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명의의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김대박 씨 부인이 경매가 될까 걱정하셨는데, 일단 가압류는 임시조치로 봐야 합니다. 경매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위한 예비조치이므로 가압류된 물건을 팔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임의로 팔면 매수인(사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도인(파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사를 위해 가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 등을 옮긴 경우에도 집행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김대박 씨 부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제소명령,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8조). 제소명령은 가압류한 사람에게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당한 사람이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도 풀리고 채권 문제로 과롭히지도 않겠지요.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내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도 합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자면 여러 가지로 불편이 따를 테니 적극적으로 다뤄 보는 것입니다. 보통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며칠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채권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그때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가압류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양 당사자의 말을 듣고 결정하게 됩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은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압류 금액을 모두 갚았거나 더 이상 가압류 할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셋째, 앞서 제소명령에서 설명했듯이 일정 기간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나 취소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압류 결정을 내린 해당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결정문과 가압류 집행 해제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이나 집행관실에 가압류 등기 말소 등을 신청합니다. 관련 서식은 법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가치분 절차

신청서접수(법원) → 서류심사 → 담보제공명령 → 가압류/가치분 결정 → 해당 등기소에 등기 촉탁 → 이의신청 → 승·패소 결정 → 해제신청

### 가치분, 재산 처분 금지 임시조치

가압류와 비슷한 제도로 가치분이 있습니다. 이전이나 처분을 미리 금지해 두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나 물건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치분을 신청할 수 있죠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치분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도박자금 관련 대표적인 가치분으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하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치분이 있습니다. 가치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아예 매매를 못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분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로 대출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수인이나 대출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혹 매도나 대출로 매수인이나 대출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매도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급한 마음에 능력도 없으면서 가치분을 풀어 주겠다고 매수인을 속여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 재산 강제로 처분하는 경매

김대박 부인 무슨 편지인데 그래요?

김대박 여보, 미안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대. 법원에서 결정문을 보냈어.

김대박 부인 갑자기 집이 넘어가면 우린 어디서 살아요? 아무 대책도 없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이사할 때까지라도 경매를 늦출 방법이 없을까요?

경매 결정은 대부분 갑작스럽고 촉박하게 되어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개시결정이 난 후 그 결정문이 송달되거나 집행관이 현황조사(부동산 상태, 임차인 등 조사)를 위해 방문할 때서야 비로소 경매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채권자가 무슨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근저당권, 법원 판결, 공정증서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 적힌 법원 경매계나 집행관에게 찾아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경매대상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뿐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소송 기술 등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유체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난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 경매, 취하시키거나 늦추거나

만약 채권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경매기일이 잡히기 전에 경매를 취하시켜야 합니다. 경매기일이 잡혀 낙찰받은 매수인이 생기면 매수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동의 대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합의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 상소 등을 하면서 제1심 판결 시까지 경매 절차를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판결이 난 후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공정증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판결이 난 줄 몰랐던 경우, 채권자가 도박채무라는 것을 속이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로 잘못 알고 경매신청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매 신청의 근거가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도박채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무효라거나 이미 빚을 갚았거나 일부 갚았다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제1심 판결 시까지 경매 절차를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면 반드시 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하고, 경매 담당 법원은 일단 경매 진행을 중지하고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경매 절차를 계속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뺨지 않으면 현황조사, 감정, 매각기일 지정, 매각허가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부동산 인도 명령 등의 과정을 거쳐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보통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종결되죠. 부동산 인도 명령은 채무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낙찰자가 법원에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낙찰자가 그 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인원을 동원하여 채무자의 모든 가재도구를 실어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합니다. 이때 보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으면 집을 비워 주는 게 좋습니다.

## 유체동산 경매, 지킬 수 있는 건 지키자

유체동산 경매의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방법과 과정은 부동산 및 자동차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의 집으로 들어가 압류 딱지를 붙이고 현장에서 매각하는 절차의 특성상 부동산과 자동차의 경매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압류할 가구 등을 경매에 붙여도 저가에 낙찰되어 집행비용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압류 딱지도 붙이지 않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에 들어가 압류 딱지를 붙이면 당황해서 저항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괜히 집행관을 폭행하면 경찰이 출동해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상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차분히 지켜보면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체동산 경매가 결정되더라도 모든 가재도구가 압류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생계에 쓰이는 물건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이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거나 지분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을 제시하면 배우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집행이 종결되면 집행관이 그 조서를 발급해 주는데, 낙찰받은 물건은 우선매수한 배우자의 소유물이 되므로 다시 집행이 들어올 경우 발급받은 조서를 제시하면 경매 진행이 중단됩니다. 우선매수할 돈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 당시 유체동산에 대해 배우자로서 공유지분을 주장하고, 배당신청을 통해 매각대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_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승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인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내 현금 가져가는 채권 강제집행

**김대박:** 어제 지급명령서를 받았어. 지난 달 도박판에서 6,500만 원을 잃었는데, 그 돈을 갚으라고 박일수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모양이야. 이러다 월급까지 압류당하면 수입도 없이 어떻게 살지? 다른 채무는 또 어떻게 갚고.

**나희복:** 나도 월급 압류당한 적 있는데, 전부 압류되지는 않더라고.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난 한동안 월급의 절반만 받고 살았지. 자네 월급에서 얼마나 압류당할지 한번 알아봐. 혹시 압류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도 월급을 전부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월급 액수에 따라 압류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은 아예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0만 원 까지는 150만 원을 제한 금액을 압류합니다. 300만 원 초과부터 600만 원 까지는 월급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6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 + [(급여/2) - 300만 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월급 외에도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의 종류를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시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서로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할 텐데요, 김대박 씨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도박판에서 잃은 돈이라면 도박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 준 것이 분명하니,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계약이니까요.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글

## 채권자가 월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월급을 비롯해 예금, 임차보증금, 공사대금 등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가져가는 제도죠. 어느 것을 신청하든 법원이 심사한 결과 채권자의 신청이 적법하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는데, 채무자의 채무자(채무자의 회사, 채무자의 거래 은행, 임대인, 건축주)에게 명령에 적힌 돈을 도박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 것과 그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압류를 당할 채무자에게는 채무자의 채무자가 법원 서류를 받은 것이 확인된 후에 압류 사실을 통지합니다. 미리 알리면 압류되기 전에 그 돈을 받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본 경매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를 제기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반드시 법원 경매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우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_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증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대신 소송 청구

앞서 김대박 씨의 경우 도박자금을 빌린 것은 무효이니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공증인에게 찾아가 대차계약의 공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박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 빌려 주었으니 무효가 맞지만,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채권이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애초에 무효인 채무계약의 경우 집행이 진행되었더라도 집행 종료 전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빛 독촉이 괴롭고 두려운 마음에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집을 나가는 등 문제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권자에게 괜한 오해를 사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 회복의 첫걸음, 채무 스스로 감당하기

도박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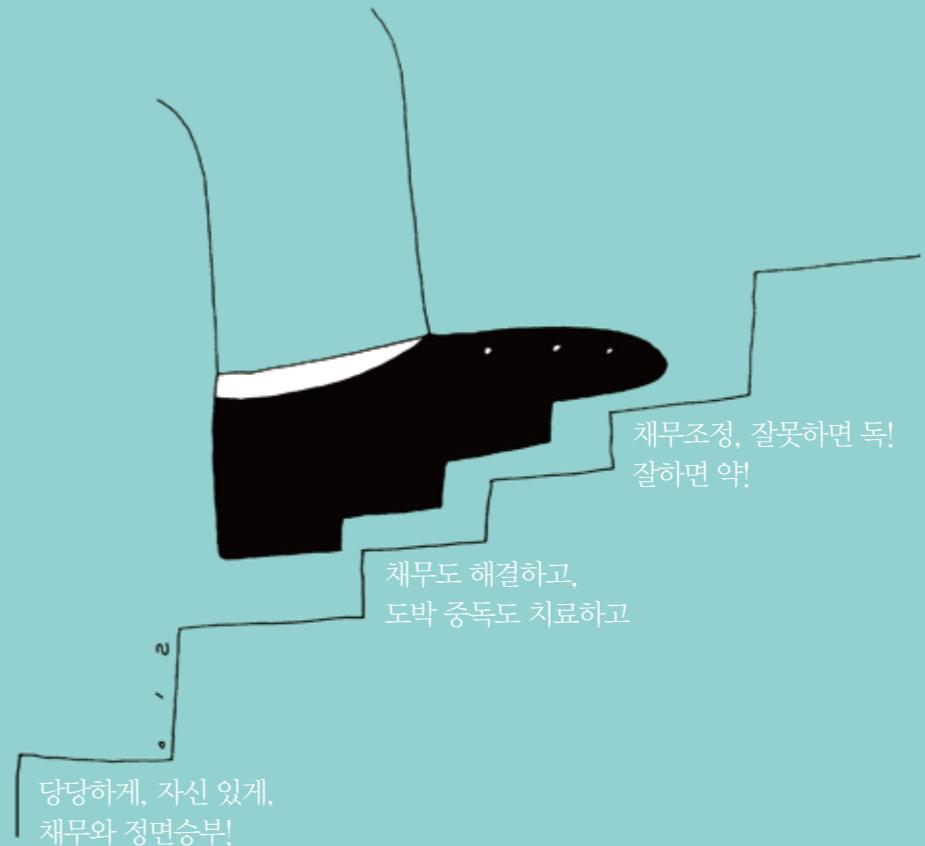
하지만 당장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채무관계에 개입하면 도박자의 도박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진 빚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차근차근 갚아 나가는 것도

도박중독에서 회복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도박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 당당하게, 자신 있게, 채무와 정면승부!

**김대박** 요즘은 죽고 싶은 마음뿐이야. 도박하느라 쌓인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모를 지경이니. 이자는 또 얼마나 불어나고 있겠어? 평생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으로 떳떳지 못하게 살 생각을 하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나회복** 그러지 말고 힘 내. 제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다네. 우선 차근차근 시작해 봐. 나라고 달랐겠나?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김대박** 부럽군. 자네 정말 대단해.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올까?

채무가 생기거나,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면 누구나 조바심이 나고 괴로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돈을 갚지 못해 생기는 죄책감도 크고요. 하지만 돈을 못 갚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갚을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박자와 가족 분들 중에는 죄책감 때문에 채권자가 불법으로 추심을 하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회복 씨가 은행에 매달 50만 원씩 저축한다면, 은행은 나회복 씨에게 소정의 예금이자를 지금 할 것입니다. 나회복 씨는 은행의 '고객'이죠. 반면 김대박 씨가 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김대박 씨는 은행에 예금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내게 됩니다. 대출이자를 내는 김대박 씨 또한 은행의 '고객'입니다. 대출 원금에 대한 압박으로 괴로워하며 문제에서 도망치기보다는 놓치고 있던 나의 권리를 행사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체된 채무가 있더라도 여러 제도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채무 해결보다 중독 치유가 먼저

대부분의 도박자가 도박으로 인해 많은 채무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이 반복될수록 신용도가 떨어져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도박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채무의 압박으로 괴로워하며 도박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다짐을 하다가도, 당장 다가오는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추심 독촉이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딸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다시 도박을 하게 됩니다. 변제해야 할 채무 금액이 많아지면 다급한 마음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박자는 빠른 시간 안에 채무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의 도움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도박을 시작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많은 도박자가 힘겹게 도박채무를 다 갚고 이제 살 것 같다고 느끼는 즈음에 도박중독이 재발하여, 다시 도박채무에 허덕이게 됩니다.

'당장', '한 번에' 채무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중독에서 '대박'을 바라는 마음과도 같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무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채무변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본질적인 중독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러한 과정에서 회복도 더디게 진행됩니다.

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도박의 결과이긴 하지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즉각적인 채무 해결만을 바라지 말고, 중독문제의 회복과정에서 중독의 치유와 함께 장기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계획을 세우세요.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만들어 내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채무를 갚아나가는 과정, 즉 내가 한 행동(도박)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중독의 치유 과정과 더불어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변제를 회복의 전 과정 중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중독의 치유를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 해결 첫걸음! 내 채무 파악하기

인터넷 신용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대출금액과 카드사용금액 등 대략적인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금융, 통신요금, 보증채무 등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의 경우 매각되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정확한 채무를 파악하려면 지금까지 받은 독촉장이나 채무 관련 우편물을 확인하고, 채무가 있던 금융사를 찾아가 채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법원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채무도 해결하고, 도박 중독도 치료하고

**김대박 아버지** 대박이 채무 때문에 고생이 많지?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갚고는 있니?

**김대박 아내** 아직 원금은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워낙 고금리 대출이 많아서. 그래도 아범이 도박을 끊겠다고 마음을 잡았으니, 차근차근 해봐야죠.

**김대박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 3,000만 원짜리 대출이라며? 이제 대박이도 도박 안 한다고 하니, 그건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해볼까?

**김대박 아내** 아니에요, 아버님. 힘들어도 그 사람 힘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요. 상담 받아 보니까, 채무 갚아 나가는 것도 중독 치료의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김대박 아버지** 그래. 대박이 힘으로 갚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가능할까?

부인께서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셨네요. 도박자의 경우 재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인도 말씀하셨듯이, 중독 치유와 함께 장기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면 안정적인 회복 과정에도 도움이 되죠. 아버님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 한 번에 해결하려는 성급한 마음은 도박자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위험한 선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중독 치유, 건강한 재무관리 습관 만들기부터

재정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설사 연체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금융권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금융제도가 본인의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개념과 평상시 재정관리 습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은 제한하고, 현금을 만지는 일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돈의 한도를 정하고, 통장에 들어 있는 용돈 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지출이 있을 때는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반드시 본인의 재정 내역을 가족 중 한 사람과 공유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밖에도 도박 유혹을 차단하는 자신만의 실제적인 채무관리 원칙을 만들어 지켜 나간다면 채무 상환은 물론 도박중독 치유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단도박을 위한 재정관리 요령

1. 각종 카드(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취소 및 정지
2. 각종 카드 한도(현금서비스, 하루 인출 상한액) 줄이기
3. 금여 자동이체: 배우자나 가족이 통장 관리
4. 한 은행에서만 거래하기
5. 현금 제한: 하루 생활에 꼭 필요한 돈(식대, 교통비 등)만 소지
6. 가족(지지자)과 함께 예산 및 재정관리 계획하기
7. 기대하지 않은 큰돈을 받게 되는 상황(상여금, 금일봉)에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하기(가족에게 알리고 일정 액 이상은 무조건 입금하기 등)
8. 동산 및 부동산 보호(공동명의, 소유권 이전, 가처분 신청 등)
9. 가족과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본인에게 돈 빌려 주지 않도록 하기
10. 현금 만지는 직업 피하기

출처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 2009

# 채무조정, 잘못하면 독! 잘하면 약!

김대박 아내 여보, 당신 알아본다는 게 구제금융제도 아니에요?

김대박 맞아. 재정상담가 만나 보니까 전환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다행이지?

김대박 아내 안 돼요! 구제금융 잘못 받았다가 다시 도박에 손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전환대출로 갚으면 원래 채무 있던 대부업체에서 다시 대출받을 수 있게 돼서, 빚만 두 배로 늘릴 위험도 있고.

김대박 나보다 먼저 도박 끊은 회복이는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고 빚 갚으라는 성화에서 벗어나니 숨 좀 쉬겠다던 걸. 회사 착실히 다니며 중독치료 상담도 꾸준히 받고, 매달 채무도 갚고 있대. 나도 조심해서 관리하면 괜찮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도박중독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출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전환대출로 갚았더라도 도박자의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도박자와 가족들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빨리 해결할 때의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중독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중독의 결과인 채무만 해결하려 하면 부작용이나 타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김대박 씨는 도박중독을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구제금융제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힘으로 차근차근 채무를 줄여 나가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의지력만 믿고 성급하게 전환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구제금융제도의 도움을 받는 과정은 중독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위변제확인서를 받거나 대출금지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찾기

구제금융제도로 채무조정을 받기로 결심을 굳히셨다면, 채무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채무조정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 변경은 실질적 변제 가능성은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채무조정)  
신용회복기금(바꿔드림론)  
캠코신용지원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캠코 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프로그램별로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 효과 등이 달라집니다. 꼼꼼히 따져 보고 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찾는 것은 채무변제를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가까운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재정상담이나 재정강좌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새희망네트워크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의 맞춤형 통합검색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개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자신의 채무정보를 조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안내해 주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상담 받는 곳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www.ccrs.or.kr](http://www.ccrs.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새희망네트워크 | 1588-1288 | [www.hopenet.or.kr](http://www.hopenet.or.kr)

##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세히 알아보기

### 1.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대상자의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채무조정, 전환대출, 소액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지원제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전환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연체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 개인 신용 6-10등급의 저신용자로 소득 활동을 하는 자(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자

#### 대출금리

- 평균 11%(신용 등급에 따라 8.5-12.5%)로 고금리 채무(원금)를 대환
- 최장 5년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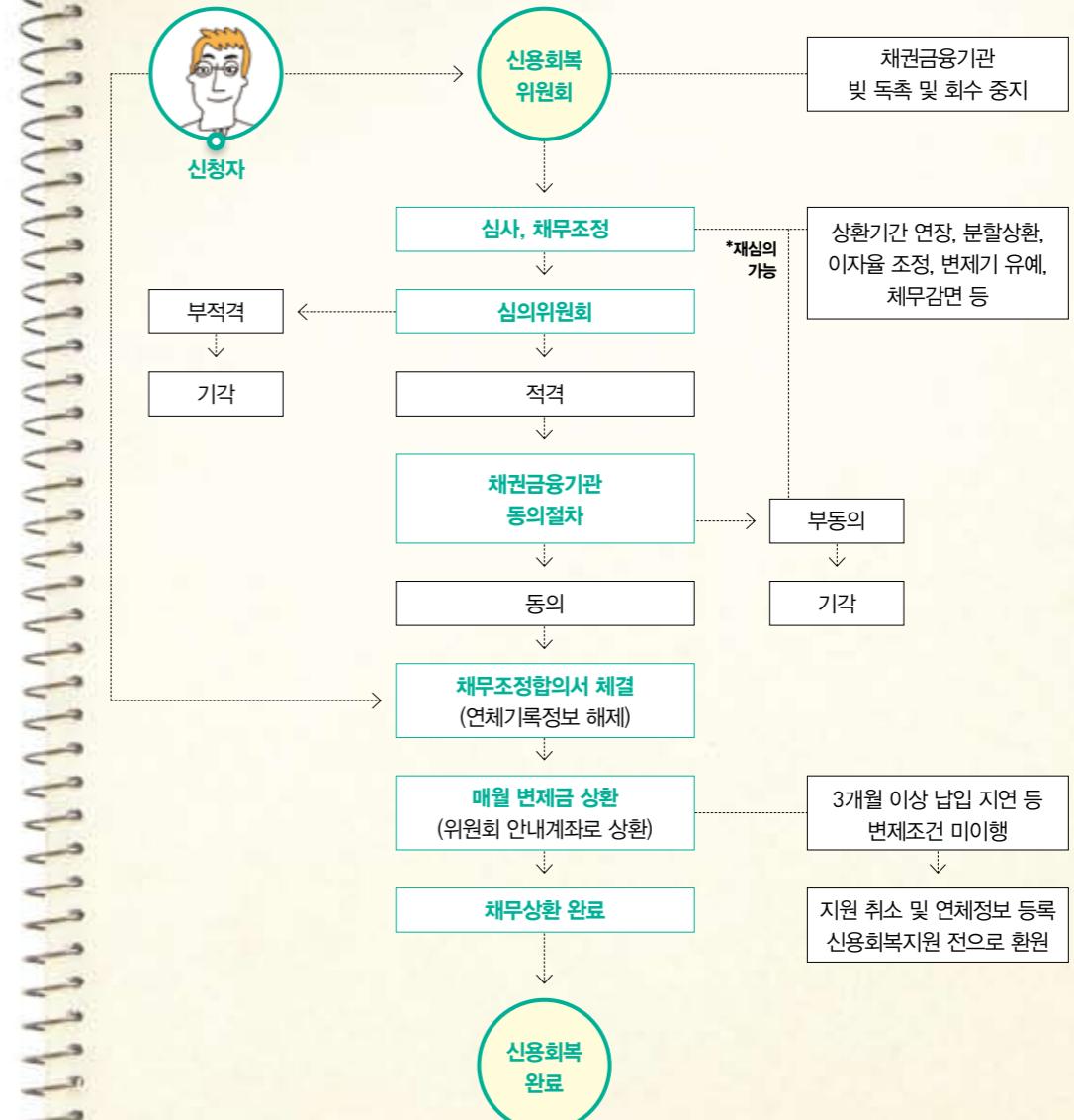
#### 대상채무

- 신용보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전 약정채무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연 30% 이상의 고금리 채무가 신규 발생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개월 전 약정한 고금리 대출과 6개월 이내 20~30% 미만 금리 대출을 함께 보유한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환대출 대상은 6개월 전 약정한 채무만 해당됩니다.
- 금리 20% 이상의 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서비스\***는 제외, 카드론은 해당
- 보증 채무 금액은 3,000만 원 이하 금리 30% 이상 채무가 3,000만 원 초과 시 보증 불가

###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채무조정의 장점은 신청 절차가 간소하며 신청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청 다음날부터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 신청이 어렵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사채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납입을 하다가 3개월 이상 납입이 지연되어 변제가 계약대로 되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환원되며,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상환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절차



\* 리볼빙 서비스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용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대부업체는 5개월), 프리워크아웃은 30~90일
- 총 채무액 5억 원 이하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프리워크아웃은 충족조건의 세부항목 별도 존재
- 보유 자산액 6억 원 미만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 채무조정

- 채무 감면 여려 조건을 감안하여 이자 채무 전액, 원금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환기간 연장 최장 8년까지 연장
- 분할 상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으로 분할 상환
- 변제기 유예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장 1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가능
- 프리워크아웃은 채무 감면 해당 없으며, 상환기간의 연장(무담보 10년, 담보 20년), 이자율 조정(약정이자율의 70%,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5% 적용, 약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변제기 유예(연체 시유가 실직, 휴업, 폐업, 재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 6개월 단위로 유예이자 3%)만 지원됨

#### 대상채무

- 신용 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 개인 간의 채무 제외
- 정부 정책자금 법규에 의해 금융회사 의결권이 제한되는 채무, 대부업체 등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는 개별 조건에 따라 정상변제가 진행됨

### 3. 서민 금융회사 '햇살론'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 개인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 대출금리

서민 금융회사(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010년 12월 기준 상호금융회사 10.52%, 저축은행 13.41%

#### 자금지원 종류

- 사업 운영자금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에게 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임차 포함 점포 보유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 창업자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
- 긴급 생계자금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임시직 포함), 영업 중인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에게 최고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 적용
- 대환자금 연체가 없을 경우 최고 3,000만 원까지. 2011년 10월부터 적용 가능

### 4. 은행권 '새 희망 훌씨대출'

기존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으로 취급되었던 '희망 훌씨'대출을 개선한 제도입니다. 2010년 11월 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기 시작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16개 은행마다 이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대출금리

국내 16개 시중은행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어 각 금융기관별로 대출금리, 금리방식, 우대조건에 차이가 있고 심사기준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2010년 10월 기준 11~14% 수준

#### 자금지원 종류

사업운영자금 및 생계자금의 목적으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 진행

### 5. 자활지원사업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 창업 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취업정보 연계제공 등을 제공합니다.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중 창업 예정이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회생이나 파산신청자, 보유자산이 많거나 자산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등은 제외대상

#### 대출금리

무등록사업자대출(2%) 외 일괄적으로 4.5% 이내에 한정됨

#### 자금지원 종류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 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대출

### 6. 법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파탄에 이를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급여소득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장래에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 등의 제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받아 줍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원금의 일부도 탕감 가능하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판결이 있을 시 개인회생 인가 이전에 추심이 중단되는 것도 개인회생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회생 절차는 까다롭기도 하고 초기 신청 당시 비용의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 있은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고,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고, 회생 신청 이후 카드사용이나 신규대출이 불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sup>\*\*</sup>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sup>\*\*\*</sup>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sup>\*\*\*\*</sup> 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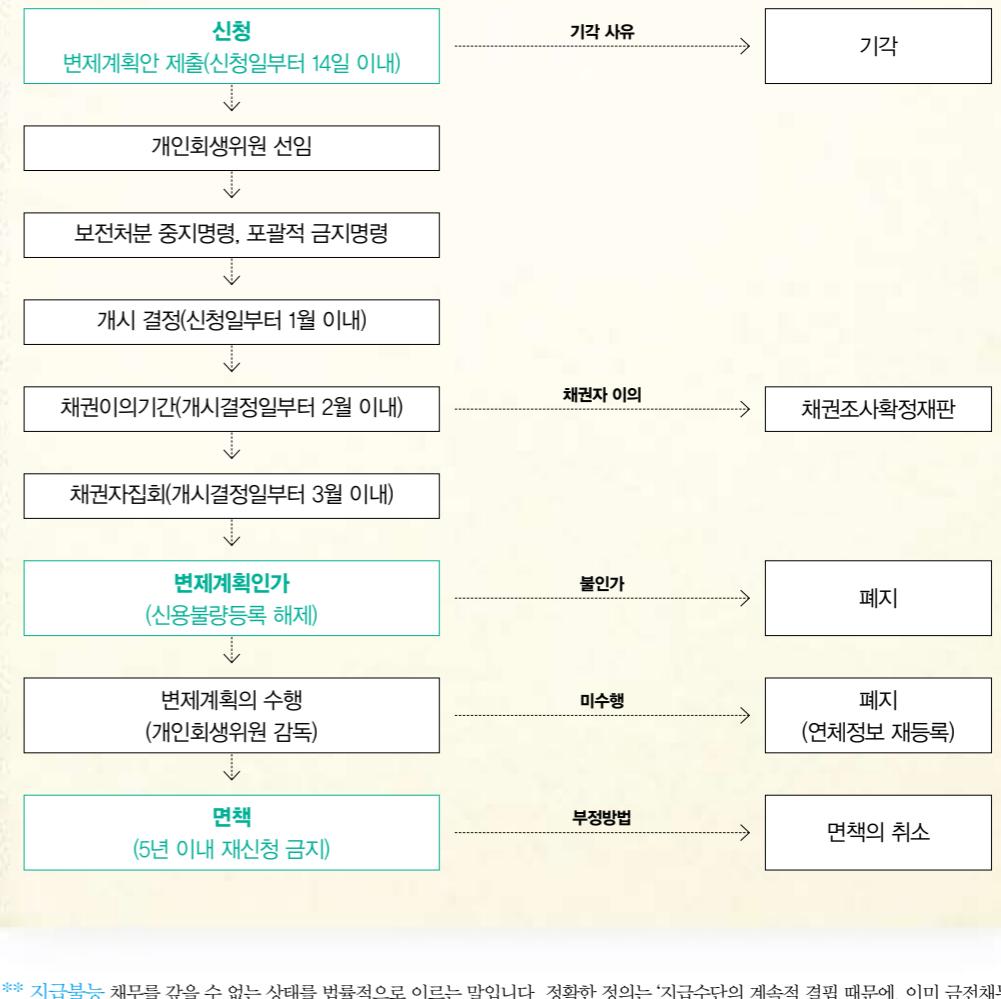
#### 채무조정

-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 변제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개인회생 절차



| **\*\* 지급불능**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지급수단의 계속적 결핍 때문에, 이미 금전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채무자의 객관적 재산상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1항)

**\*\*\* 배드뱅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의 이름입니다.

**\*\*\*\* 화의절차** 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의법 및 화의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 7. 법원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면책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여 변제책임 면제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지만, 전문직의 자격취득(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부동산 중개업이나 건축사 등의 자격허가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박 등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는 면책 불허 사유이므로 도박자의 경우 신청에 한계가 있습니다. 파산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면,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판사의 재량으로 면책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인 개인의 신용, 노동력,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 비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용회복기금(채무조정)	신용회복기금(바꿔드림론)	캡코 신용지원	희망모아
신청대상	신용회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대출업체의 고금리 채무 보유자,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이 있는 자, 현재 연체가 없으며,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없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대상채무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 2008년 12월 31일 기준 채권 잔액 5,000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고금리채무, 연 20% 이상 고금리,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채무	희망모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보유 채무
채무범위	5,000만 원 이하	원금 3,000만 원 이하 *특수채무자는 채무액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000만 원 이하
채무조정 수준	재산 無: 연체이자 감면, 전채권 원금 30% 감면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 시 채무상환유예 가능)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8.5% ~ 12.5%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	재산無: 연체이자 감면, 전채권 원금 30% 감면 재산有: 재산가치에 따라 감면 여부 결정	재산無: 연체이자 감면, 전채권 원금 30% 감면 재산有: 재산가치에 따라 감면 여부 결정
보증인에 대한 효력	약정 후 보증인 추심 보류, 주 채무자 연체 시 추심 가능	해당사항 없음	약정 후 보증인 추심 보류, 주 채무자 연체 시 추심 가능	약정 후 보증인 추심 보류, 주 채무자 연체 시 추심 가능

신용정보 (연체 등 정보)	약정 체결 시 '연체정보' 삭제 및 '신용회복 지원 중'으로 등록 24개월 성실 상환 시 상기 기록 삭제	해당사항 없음	약정 체결 시 연체 정보 해제, 3개월 이상 연체 시 재등록	약정 시 신용정보사에 등재된 연체정보 해제 및 '희망모아 약정하였음'으로 등재, 24개월 성실납부 시 상기 기록 삭제
기타	연소득 4,000만 원 초과 시 지원 불가, 총부 채상환비율(DTI) 40% 초과 시 지원 불가, 신용회복지원 중인 경우에도 보증심사조건 충족 시 바꿔드림론 가능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시 소액금융지원(マイクロ파이낸스)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시 소액금융지원(マイクロ파이낸스)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시 소액금융지원(マイクロ파이낸스)

연락처 | 홈페이지 전화 1588-3570 |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프로그램	프리워크이웃	개인워크이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대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상 금융채무 연체자,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채무불이행 상태	채무불이행 상태
대상채무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제한 없음(사채 포함)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채무조정 수준	연체이자 감면 최초 약정 이자율의 70% 적용(최저 5% 적용, 단, 기존 이자율이 5% 미만이면 기존 이자율 적용)	이자채권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 감면, 8년 이내 분할상환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변제기간 5년 이내	파산선고 후 면책
보증인에 대한 효력	약정 후 보증인 추심 유보, 주 채무자 연체 시 추심 가능	약정 후 보증인에 대한 추심 불가, 연체 시 보증인에 대한 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추심 가능
신용정보 (연체 등 정보)	지원 확정자 별도 등록 없음	지원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2년 이상 상환 시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중) 삭제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변제계획 이행 완료 시 특수기록정보 (개인회생 인가) 삭제	면책결정 시 해제, 5년 경과 시 특수기록정보 (파산면책자) 삭제
기타	한시적 운용 (시행일로부터 1년)	취업지원, 소액금융 지원 등 입체적 지원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서비스: 전화 (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 <a href="http://www.klac.or.kr">www.klac.or.kr</a>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1600-5500   홈페이지 <a href="http://www.ccrs.or.kr">www.ccrs.or.kr</a>	해당 지역의 법원		

\*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두를 지키는 도박 채무 예방법

도박에 빠져 경제관념도 자제력도 잃은 도박자가 아예  
빚을 질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다면, 도박자의 채무로 가족 전체가  
괴로움에 빠질 일도 없겠지요. 성인의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도박자가 도박에 빠져 있는 경우와 치료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채무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흔들리는 마음, 신용카드 신규발급 정지로 잡아요



최후의 선택, 한정치산자 선고

# 흔들리는 마음, 신용카드 신규발급 정지로 잡아요

**김대박 부인** 이 카드 뭐예요? 당신 신용카드 다 없앴잖아요.

**김대박** 어, 그게. 하도 좋은 혜택이 많다고 해서 하나 만들었어. 용돈 떨어지면 돈 한 푼 없이 다녀야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김대박 부인** 그러니까 용돈이 떨어지지 않게 써야죠. 이래서 어떻게 밀린 채무를 갚겠어요? 그 카드로 얼마나 썼어요?

**김대박** 사실, 나도 만들어 놓고 당신한테 말할 면목이 없어서 벌써 한 달 연체됐어. 미안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만들라고 설득하니까 순간 흑해서 그만. 막상 만들고 나니 자꾸 쓰고 싶고. 없앨게.

**김대박 부인** 이럴 게 아니라, 당분간이라도 아예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게 막는 건 어때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김대박 씨처럼 용돈이나 생활비로 쓰려고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쓸 위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모르는 '돈줄'을 갖는 것은 도박중독 치유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한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다지고, 도박중독 치유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고 싶다면,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확인서나 정신과 치료 등 최근 병원진단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신청 요령

### 1. 본인 명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 요청 시

#### 구비서류

- ①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요청서(인감날인 요함): 기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②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인감날인 요함)
- 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가능)
- ④ 인감증명서 1부

### 2. 가족이 도박자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 요청 시

#### 신청요건

가족이 채무를 대신 변제(500만 원 이상)했거나 최근 병원진단서(정신과 치료 등)가 있을 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①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요청서(인감날인 요함)
- ②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인감날인 요함)
- 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대상자, 요청자 각각 1부(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대체 가능)
- ④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시 호적등본 필요)
- ⑤ 인감증명서: 대상자, 요청자 각각 1부(직접 방문 시에는 필요치 않음)
- ⑥ 500만 원 이상의 **대위변제\*** 내역 또는 최근 병원진단서

\*협회 직접 방문 시에는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대상자는 오지 않고 가족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지 시에도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 **대위변제** 가족이 도박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도박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대신 갚아 준 가족이 넘겨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도박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이후 동일업체에서 추가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최후의 선택, 한정치산자 선고

김대박 부인 아버님, 아범이 또 도박을 해요.

김대박 아버지 뭐라고? 아니 개가 돈이 어디 있어서?

김대박 부인 저 몰래 가게 계약서를 가져가서 대출을 받았나 봐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가게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니 이번에 받은 대출은 제가 갚고 한정치산자 신청을 할까 봐요. 그걸 하면 혼자서 돈 빌리거나 할 수 없다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겠죠.

김대박 아버지 네 말이 다 맞긴 하지만, 괜찮을까?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생긴다던데. 그러다 제 밥벌이도 못하고 더 망가지면 어쩌니?

김대박 부인 어차피 가게 일손도 부족하니 당분간은 저랑 같이 가게 일하면서 치료받고, 나중에 상황 봄서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게까지 담보로 잡히다니, 부인 입장에서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한정치산자 선고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재산을 낭비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심판입니다.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미성년자처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 선고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도박문제가 재발하여 경제적 피해가 생길까 염려하는 가족이나 도박자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말씀대로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직업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김대박 씨의 경우 부인과 함께 가게를 하신다니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한정치산자 선고 자체가 도박자 본인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족과 도박자가 함께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절차도 까다로워서, 법원에 따라서는 한정치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박자의 정신검정 결과나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정치산자 선고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돼도 추가 대출 및 할부제도 이용이 불가능해 더 이상의 채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대신 채무를 갚아 주기로 결정했을 경우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가족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밖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도박자와 가족의 대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도박자가 채무로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한정치산자, 신고부터 취소까지

한정치산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선고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경우 가장 큰 불이익은 직업생활과 관련한 것입니다. 각종 공법상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데, 특히 공무원의 자격 결격사유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이 박탈될 뿐 아니라,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지켜야 하는 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에서는 한정치산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치산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결정되면 한정치산에서 회복되고,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죠. 한정치산 선고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의 대상이 되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한정치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 속으로

### 스스로 한정치산자가 된 남자

2003년, 한 대학생이 인천지법에 자신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가 내 재산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요청 이유였다. 대학생 신분으로 주식투자에 실패해 큰돈을 잃은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 미래가 창창한 자식이 주식투자로 큰돈을 잃자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졌고, 그는 자책감으로 우울증까지 앓은 상황이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정치산자가 된 그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취직해서 일하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수습했다. 가정형편이 나아진 2007년에는 대학에도 다시 입학했다.

지난 2010년, 졸업을 앞둔 그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의 한정치산 선고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정치산자 선고를 요청한 지 7년 만이었다. 한정치산자 신분 때문에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자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윤종섭 판사는 A씨가 “스스로 신청해 내려진 한정치산 선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한정치산 취소 심판 청구에서 “A씨의 사정 등을 감안해 청구를 인용한다”고 심판했다.

이 내용은 2011년 2월 9일자 뉴시스 기사를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 도박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상식

평생 법적으로 따질 일 없이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은 형사사건이니  
민사사건이니 하는 법률용어만 들어도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법에 따라 차근차근 풀어 나갈 수 있는 일도 괜히 겁부터 먹고  
허둥대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도박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두루 살펴보고, 혼명한 대처 방법을 알아봅니다.

국가가 죄를 묻다, 형사사건

가족 공동체에서 남으로, 이혼

가족이어서 더 아픈, 가정폭력

독이 든 사과? 도박자의 상속

갚는 게 상책, 세금체납



# 국가가 죄를 묻다, 형사사건

**김대박 부인** 혹시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회복** 제수씨,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도박 끊은 후로 그 친구 통 못 봤는데….

**김대박 부인** 집에 형사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이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명의를 빌려 준 모양인데, 그이 명의로 만든 휴대전화가 범죄에 사용됐나 봐요.

**나회복** 큰일이네요. 그렇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텐데.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제수씨도 그 친구가 돌아오면 빨리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라고 하세요.

명의를 빌려 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회복 씨 말씀대로 빌려 준 명의로 구입한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죠. 형사사건은 국가가 정해 놓은 죄의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사회의 안전이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죄의 항목을 정해 놓고, 이를 어겼을 때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당사자끼리 합의해 종결할 수 없으므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박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도박자들은 명의도용, 공금횡령, 절도, 사기, 불법대출 등의 형사사건에도 자주 연루됩니다. 특히 김대박 씨처럼 도박자금을 구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휴대전화와 같은 내구재와 차량을 구입하는 명의를 빌려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구입된 휴대전화나 차량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과다한 요금이나 과태료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의 글



## 형사상 책임에 요금폭탄까지, 휴대전화불법대출(대포폰)

휴대전화불법대출, 속칭 대포폰은 휴대전화의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김대박 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렇게 빌려 준 휴대전화는 스팸문자 발송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요금이나 벌금 등은 명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몇십만 원의 현금에 대한 유혹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에 아예 연루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벌써 휴대전화불법대출을 받았다면 민생연대 홈페이지에 나온 대처요령을 참고해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불법대출, 이렇게 대처하세요

#### 1. 가까운 통신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통화내역서, 휴대전화 개통 시 제출한 관련서류 사본 일체, 요금청구내역 등

#### 2. 휴대전화 사용을 정지시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정지시킬 때 비밀번호를 걸어 둡니다. 단순히 정지만 시킬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3. 사채업자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사채업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업자 수, 이름, 통장 계좌번호나 입금자 이름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거주지 경찰서에 사채업자를 고소하고(휴대전화 대출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 접수장이나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받아 둡니다.

####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면?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난처한 일이지만, 본인이 동의했으므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유금액이 있다면 총 금액에 비해 소액이더라도 우선 입금하여 변제를 하십시오. 이동통신회사 요금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조정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가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연체이율을 고려해 채무조정제도(58page 참조) 활용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처 민생연대 홈페이지 [www.minsaeng.org](http://www.minsaeng.org)

## 형사상 책임에 경제적 불이익까지, 차량불법대출(대포차)

차량불법대출, 속칭 대포차는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명의를 빌려 주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불법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때 구입된 차량은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이나 차량이 범죄와 연루되어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 또한 명의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피해를 당하면 간혹 도난되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차를 돌려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빌어 자동차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재산가액 초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피해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포차 신고를 받는 곳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의 경우에도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판매인이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를 하였다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포차량을 신고하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차량을 찾은 후 운행자에게 차량인도명령을 내거나 견인 처리합니다. 차량이 회수되면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서울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시청 38세금징수과(02-3707-8671~76)

구청 세무과, 교통행정과, 주민센터

## 형사적 책임에 신용도 하락까지, 현금인출카드 양도(대포통장)

간혹 불법 대출광고를 보고 본인 명의로 예금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만들어 양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현금인출카드 양도를 속칭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요. 불법 대출업자가 대출해 줄 의사도 없으면서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장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도박자가 당장 급한 도박채무를 갚기 위해 통장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이 금지하고 있으니

타의든 자의든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포차와 대포통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피해는 엄청나게 커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의 수익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내구재나 대포차 등 불법대출의 피해를 직시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덮어 두기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를 권유합니다.

## 형사사건 처리절차 이해하기

휴대전화불법대출, 차량불법대출, 현금인출카드 양도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많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런 막막함을 덜기 위해 그 처리 절차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고소장은 민원실 접수 이후 해당 경찰서의 형사가 담당합니다. 형사에게 고소장이 분배되면 순서대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장 접수 후 약 10일 정도 후에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각각 경찰서에 갑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경찰은 조사를 한 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 의견으로, 없으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검사는 경찰 조사가 부족하면 다시 검찰로 불러 조사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판단을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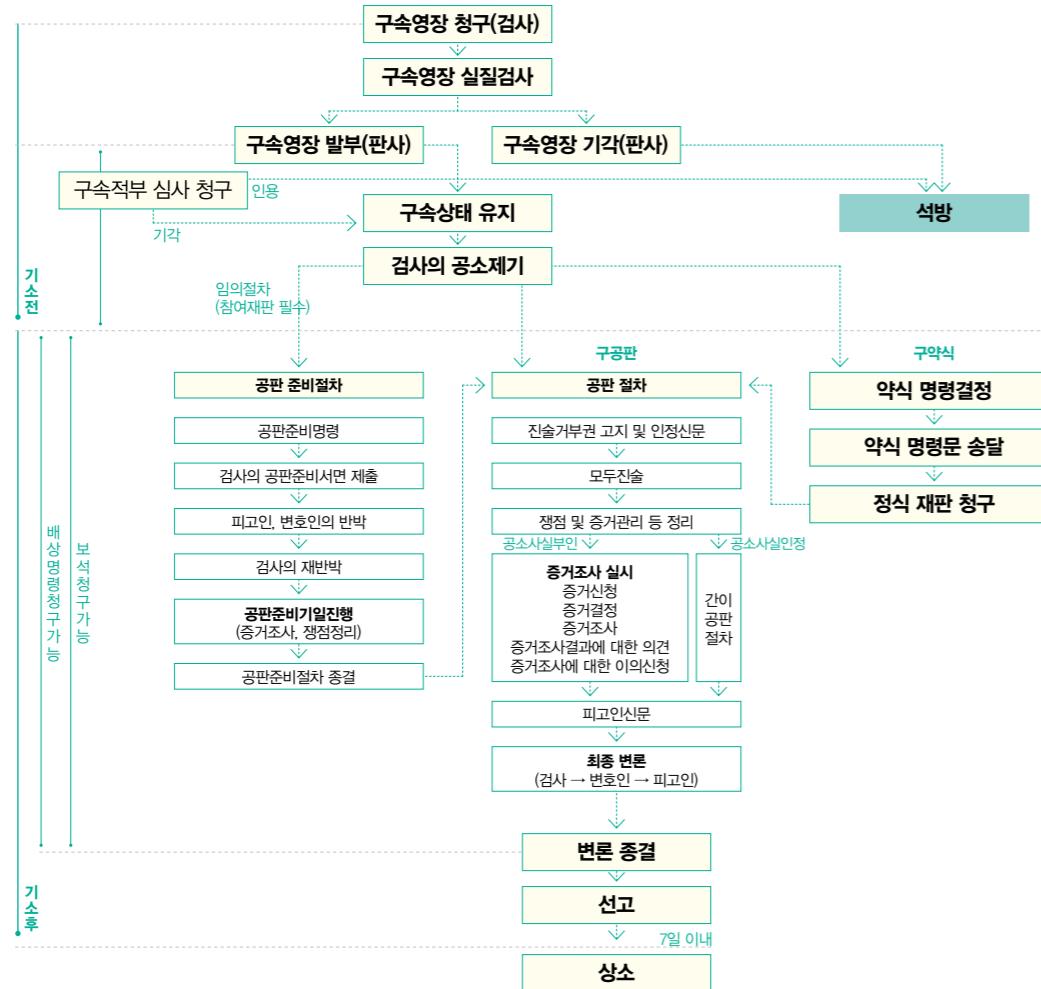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범죄가 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를 하죠. 기소의 방법은 벌금형을 구형하는 구약식 절차와 징역형을 구형하는 구공판 절차가 있습니다.

구약식 절차에서는 판사가 신문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아서 법원으로 소환합니다. 구공판 절차에서는 법원으로

| \* [공매](#)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로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합니다. 이때 매매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합니다.

소한하여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약 도박자가 가출 등으로 부재중일 때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있었다면, 현재 해당자가 집에 없고 고소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리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하고 기소중지합니다. 그러나 만약 체포될 경우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형사사건 처리절차



## 가족 공동체에서 남으로, 이혼

**김대박 부인**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우리 이혼해요.

**김대박**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제 잘할게. 도박도 안 할게.

**김대박 부인** 도박 안 한다고 각서 쓴 게 몇 번인 줄 알아요? 이제 안 속아요. 나는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하는데, 당신은 문제 생길 때마다 나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빚쟁이 감당하는 것도 내 몫. 생활비 버는 것도 내 몫. 살림하는 것도 내 몫. 이제 더는 이렇게 안 살래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김대박** 안 돼! 이혼은 절대 못 해! 안 해!

**김대박 부인** 뭐예요? 그렇게 속 썩인 것도 모자라 이혼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김대박** 그래. 난 절대 이혼 못 하니까 그런 줄 알아.

**김대박 부인** 또 도망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소송해서라도 이혼할 테니 그런 줄 알아요!

김대박 씨 부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840조](#)). **계속된 도박으로 가족들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죠(대법원 91므559 판결)**.

배우자가 도박을 하는 경우 반복되는 경제적 문제와 불신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도박자가 도박을 끊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도박중독을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에 대해 쉽게 말하고 요구하는 행동은 부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최후의 방법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부부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갈라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방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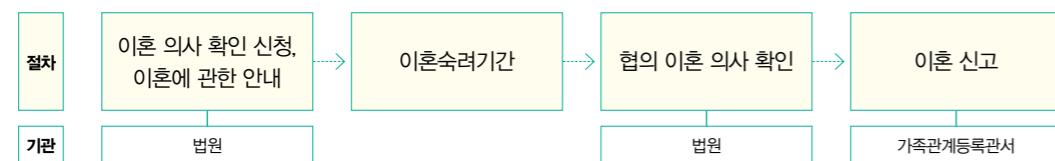


## 분쟁 없는 이별,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갈라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사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도박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로부터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협의상 이혼으로 부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부인이 갖는 것으로 협의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쌍방의 합의사항이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의 정도가 비상식적일 경우 도박자의 채권자들이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협의 전 법률전문가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 1.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리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상담 위원에게 상담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2.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의 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3.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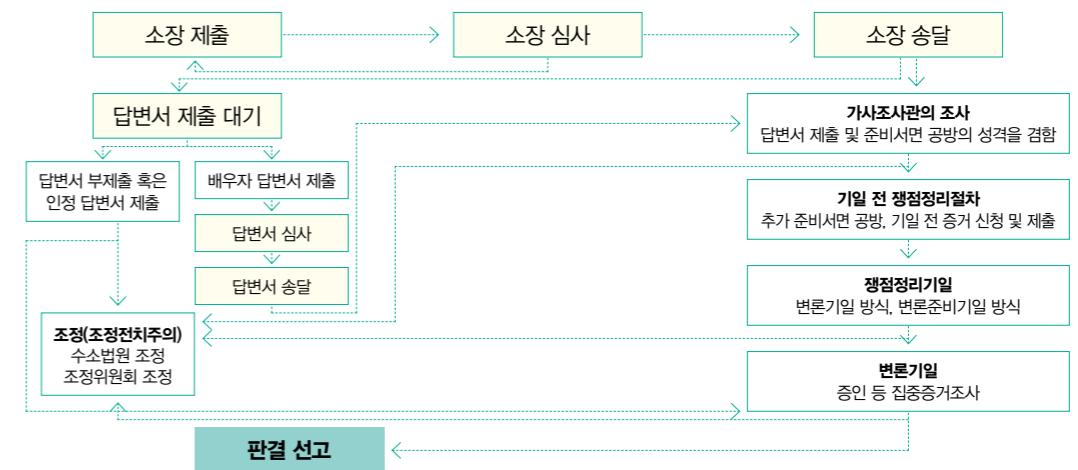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별에 대한 의견 충돌, 재판상 이혼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원치 않을 때, 상대방이 소재불명이어서 협의할 수 없을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먼저 이혼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내용에 대해 조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부부 간에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당사자 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나누는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한하지만, 한쪽에게 속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판단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분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족과 관련하지 않은 채무가 발생되었다면 그 채무는 분할하지 않습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재산이 감소하고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그 도박자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합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도박자가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 채무로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 판례 이혼 관련 판례 모음

- ①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④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⑤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스36).

2.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93스6).

3.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대법원 2003므2251).

뉴스 속으로 

### 부정행위로 돈 탕진한 남편, 위자료에 재산분할 불이익까지

2008년 사내연애를 하다 결혼한 아내 A씨와 남편 B씨. 하지만 그들의 결혼생활은 남편의 외도와 도박 등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파경을 맞았다. B씨는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을 파탄 냈을 뿐 아니라 1억 원을 탕진하며 부부의 재산에까지 손실을 입혔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월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지만, 부정행위로 돈을 많이 탕진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가사3단독 송증호 판사는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정과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외도한 남편이 번 돈을 도박과 부정행위로 상당부분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남편과 청구인의 재산분할비율을 35대 65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편은 청구인(부인)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8,100여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자녀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내용은 2011년 11월 10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 가족이어서 더 아픈, 가정폭력

이웃 새댁! 나 좀 봐.

김대박 부인 저, 지금은 좀 곤란한데…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이웃 어젯밤에 집 안을 다 때려 부수는 소리 듣고 괜찮은지 보러 온 거니까 문 좀 열어 봐.

김대박 부인 들어오세요.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이웃 도박하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고, 얘기 아빠 정말 너무하네.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

김대박 부인 그러지 마세요. 가뜩이나 이웃 분들 뵙기 부끄러운데. 그 사람도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던진 게 그만….

그리고 어쨌든 우리 딸 아빤데, 전과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당연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남편이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가 폭력이죠. 일부 도박자는 도박자금을 구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가족들은 부끄럽기도 하고 문제가 알려졌을 때 도박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난처한 상황을 겪을까봐 걱정스러워 문제를 숨기고 외부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특성상 한 번 시작되면 그 정도도 점점 강해지고 횟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이제 경찰이 지켜 드립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는 가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요청할 때에도 퇴거 등 격리 조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게 이러한 구호조치를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독이 든 사과? 도박자의 상속

나회복 얼마 전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처자식이 없으셔서 내가 상속인이라.

김대박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좋은 일 아닌가? 재산이 얼마나 있으시대?

나회복 살고 계시던 집 정도겠지. 어쩌면 빚이 더 많을지도 몰라. 가정이 없어 그런지 노름 좋아하시고, 마음 가는 대로 사셨지. 얘기 들어 보니 상속 잘못 받았다가 빚만 잔뜩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우선 좀 알아보려고.

김대박 하긴, 그런 얘기 들었어. 그래서 도박중독자 가족들은 대부분 상속을 포기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을 물려받는다고만 생각하는데, 나회복 씨처럼 채무도 상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박중독자 가족 분들은 상속 여부를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도박자가 많은 채무를 남긴 채 사망했을 때 가족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상속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도박자의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같이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와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법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서로 되며, 이때 배우자는 1순위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민법 제1000조)



## 재산도 채무도 안 받아요,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면 도박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도박자가 생전에 남긴 재산만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 도박자의 유족에게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은 그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순위자도 포기하게 되면 끝나지 않고 계속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43조).

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주의할 것은 만약 유족이 도박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속포기 신고는 무효가 되고 채무도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원하는 경우 상속이 된다는 것을 안 날(도박자가 사망한 날이나 사망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도박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제1041조)。

## 다른 가족에게 피해 없도록, 한정승인

상속은 계속해서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박자가 할아버지인 경우 그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손자가 상속을 받거나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할아버지의 다른 자식과 손자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도박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재산 보다 더 많은 경우, 다른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는 한정승인 제도를 권유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짜리 집 한 채와 4억 원의 도박채무를 상속받았다면, 집값에 해당하는 1억 원의 채무만 유족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원하면 상속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할 재산과 상속할 채무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또한 이후에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도박자가 사망할 당시에는 채무가 많은 것을 몰랐다가, 몇 년이 지나 도박자의 채권자가 유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사실을 알게 된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0조).

## 또 다른 문제, 사후 추심과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신고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여 큰 문제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보냅니다. 간혹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빚 독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심판문 복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박자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망보험금도 도박자의 상속재산에 속할까요? 먼저 보험증권을 살펴서 보험 수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전액의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다른 채무까지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도박자가 약관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금융감독원([www.fss.or.kr](http://www.fss.or.kr))의 금융민원센터 창구를 이용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 관련 인터넷 상담사례

### 상담 의뢰인 질문

친형이 도박꾼들에게 오랫동안 노름빚으로 과롭힘을 당하다 결국 며칠 전에 자살을 하였습니다. 사망한 이후에도 아직 해지하지 못한 휴대전화로 돈을 갚으라며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노름빚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빚을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상담자 답변

친형께서 빚독촉을 당하시다 자살을 선택하셨다니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박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가족들이 겪고 있는 당황스런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염려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1. 민법103조에 해당하는 채무는 무효** 우선 형님의 채무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도박꾼에게서 빌린 것이라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도박장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니, 만약 고인의 빚이 이런 곳에서 빌린 도박 빚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고인이 살아계셨어도 갚지 않아도 무관했을 것입니다.

**2. 채무의 상속을 피하는 방법** 유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가족이 지급보증을 서지 않고 형님 본인 명의로 빌리신 것이라면 형님이 살아계셨어도 가족들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형님의 상속을 받으신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을 받았고 고인의 빚이 도박 빚이 아니라 차용증을 쓰고 합법적으로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면 상속자에게 채무변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고인의 채무 정도를 모르고 상속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고인 사망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일정 한도 내에서 재산 및 채무를 상속)이나 '상속포기'(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불법추심행위에 대처하기** 채권자들은 가족들이 고인의 사망으로 받은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날 최소한의 여유조차 주지 않는 악덕 대부업자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악덕 채권자들은 불법일지라도 심약한 부모님을 괴롭혀서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09.8 현재)' 제9조6항을 보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채권추심자가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 마시고 신고를 하시거나 강력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강압적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전화 내용은 저장하거나 녹취해 두시고 바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독예방치유센터 인터넷상담 답변 글 중에서

## 갚는 게 상策, 세금체납

**김대박** 도박 빚 때문에 집을 팔았더니, 나라에까지 빚을 지게 생겼어.

**나회복** 그게 무슨 말인가, 나라에 빚을 지다니?

**김대박**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만만찮더라고. 의료보험료도 체납됐는데 집 판 돈은 벌써 채권자들이 거의 가져갔고,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 오래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한번 버텨 볼까?

**나회복** 그거, 쉽지 않을 걸. 그러지 말고 세금도 나눠서 내는 방법이 있다는데, 한번 알아보자 그래?

세금체납은 바로 신용정보에 등록되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다 더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국가의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등 구제제도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기관에 정확히 알아보고 우선순위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 연체되기 전에 나눠 내자, 분할납부

당장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나회복 씨가 말씀하신 분납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제외)에 관한 현행 각종 세법에서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이 예상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분납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이미 발생된 체납세액을 분납하는 제도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세무서 담당자의 동의하에 분납이 가능할 수도 있다니 세무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박 씨가 말씀하신 세금을 안 내고 오래 버티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성공 확률도 낮습니다. 소멸시효는 국가가 세금 징수 조치를 5년간 취하지 않을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고, 그때마다 시효기간은 다시 시작되니,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병원을 이용할 때 보험 적용이 제한되어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체액 또한 세금처럼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전화로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연체된 기간만큼,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관련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금 관련 상담 기관

**국세청(국세 상담)** (국번 없이) 126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문의** 1577-1000

##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아래의 법조항과 판례는 본 안내서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연결됩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 민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

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행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 필자 주)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는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민사 집행법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등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 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형법 제246조** 일시오락을 벗어난 도박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개장(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 인터넷 게임장 개설, 입장료 받는 마작 휴게실 등)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재산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

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①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기타

### 대부업법

**제6조제5항**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①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제6조(이행강제금)** ①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자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자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 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제7조(벌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③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일부개정 2018.8.4 법률 제11005호]**

**제4조(신고의무)**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②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③「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④「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4.12〉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③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전문개정 2011.4.12〉

#### 대법원 판례

**대법원 72다2249 판결**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대법원 84누692 판결**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겨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91므559 판결**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대법원 95다49530-49547 판결** 급여자(돈을 빌린 사람)가 수익자(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여자의 주택을 수익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만 내기 바둑에의 계획적인 유인, 내기바둑에서의 사기적 행태, 도박자금 대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폭리성과 갈취성 등에서 드러나는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내기바둑에의 수동적인 가담, 도박 채무의 누증으로 인한 도박의 지속,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한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급여자로서는 그 주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도9330 판결** ①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특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

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려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기도박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법률문제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무료 법률상담) \* [www.klac.or.kr](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지소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무료법률상담
- 2) 합의중재: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권유
- 3)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소송가액 1,000만 원 이하, 차용증을 소지한 경우와 같이 단순한 사안의 소송서류 무료 대서, 소송 진행 과정의 조언
- 4) 민사 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 소송대리
- 5) 형사사건 무료변호: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사건 무료변호
- 6) 기타 준법계몽활동(법률강연, 출장상담),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등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먼저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야 한다. 공단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

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하여 준다.

### 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지방은 각 지부에서 면접상담)

[lawhome.or.kr](http://lawhome.or.kr) 사이버 상담실

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다. 전화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www.legalaid.or.kr](http://www.legalaid.or.kr)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은 변호사협회가 설립한 법률구조법인이다. 빈곤, 법의 무지,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행함으로써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법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다.

### 절차

법률구조 신청 → 재단 심사 → 법률구조 결정 → 변호사 선임 → 소송 진행(소송비용 대체 지급) → 소송 종료 → 비용 환수 또는 비용상환 면제 → 법률구조 종료

###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 2)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 3)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 4)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 5)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구조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한 자
- 6)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신청서류

법률구조신청서, 사건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 재산관계진술원, 외국인등록증, 하나원수료증 등

### 대법원

[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판례 및 각종 공고가 게시된다. 특히 법률과 판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와 각종 양식 등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전자 민원 센터(help.scourt.go.kr)'가 유용하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검색어를 입력해 각종 판례 및 법률, 법조문 헌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각종 사법과 관련된 절차 안내, 관련 양식, 재판 지원, 법원/등기소의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우리나라의 대표 법령 정보 전문 종합 사이트다. 현행 법령 및 앞으로 시행될 법령들이 소개되어 있다.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판례들도 볼 수 있고, 이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자법령집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센터가 판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 [lawqa.jinbo.net](http://lawqa.jinbo.ne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거나 법을 몰라서 호소할 곳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조정, 화해, 무료대서를 해주고 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신상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채무조정 및 재정문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www.ccrs.or.kr](http://www.ccrs.or.kr)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새희망네트워크** 1588-1288 \* [www.hopenet.or.kr](http://www.hopenet.or.kr)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소액금융,  
취업·창업, 복지정보 제공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1332 \* [www.fss.or.kr](http://www.fss.or.kr)

**서민금융119** (국번 없이)1332 \* [119.fss.or.kr](http://119.fss.or.kr)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포탈, 서민금융지원,  
서민대출, 사금융피해, 전화금융사기 정보 제공

**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국번 없이)132 \* [resu.klac.or.kr](http://resu.klac.or.kr)

**개인회생·파산 관련 정보제공**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빌딩 9층  
02-3482-1708

**부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2-3층  
051-505-1671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유쉘가 5층  
053-756-1801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도박중독 상담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증독예방차유센터**

080-300-8275 \* [www.pgcc.go.kr](http://www.pgcc.go.kr) \*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박중독예방차유센터**

080-770-8275 \* [gg.pgcc.go.kr](http://gg.pgcc.go.kr)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부산 도박중독예방차유센터**

080-400-8275 \* [pusan.pgcc.go.kr](http://pusan.pgcc.go.kr) \* 부산광역시 동구

**광주도박중독예방차유센터**

080-345-8275 \* [gj.pgco.go.kr](http://gj.pgco.go.kr) \* 광주광역시 서구

**강원도박중독예방차유센터**

080-655-8275 \* [gw.pgcc.go.kr](http://gw.pgcc.go.kr)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한국마사회**

**유캔센터**

080-815-1190 \* [ucancercenter.kra.co.kr](http://ucancercenter.kra.co.kr) \* 서울시 서초구

**강원랜드**

**KL증독관리센터(서울)**

080-757-5535 \* [klacc.high1.com](http://klacc.high1.com) \* 서울시 마포구

**KL증독관리센터(사북)**

080-757-5545 \* [klacc.high1.com](http://klacc.high1.com) \* 강원도 정선군

**국민체육진흥공단**

**희망길벗 경륜경정중독예방차유센터**

080-646-5000 \* [www.c-mclinic.or.kr](http://www.c-mclinic.or.kr) \* 경기도 광명시

**민간 센터**

**희망을 찾는 사람들(희망센터)**

033-591-2221 \* 강원도 정선군

**단도박모임** ※전국에 지역별로 있음

**한국단도박모임(co.kr)**

02-888-8320 \* [www.dandobak.co.kr](http://www.dandobak.co.kr)

**한국단도박모임(or.kr)**

02-2636-1142 \* [www.dandobak.or.kr](http://www.dandobak.or.kr)

**한국도박중독자가족모임(co.kr)**

02-855-5004 \* [www.dandobakfamily.kr](http://www.dandobakfamily.kr)

**한국단도박가족모임(or.kr)**

02-522-8483 \* [www.dandobak.or.kr](http://www.dandobak.or.kr)

## 참고도서 및 홈페이지

**참고도서**

김홍엽,『민사소송법론』 박영사, 2011

김충엽,『민사집행법』 박영사, 2011

강이든,『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심양미디어, 2010

김용국,『생활법률 상식사전: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생긴다』, 위즈덤하우스, 2011

김주수,『주석 민법 '상속(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김주수,『친족·상속법』, 법문사,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개인파산 회생실무』, 박영사, 2011

양정수,『계약법』, 박영사, 2010

우금도,『민사집행법』, 진원사, 2011

이시윤,『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임종률,『노동법』, 박영사, 2011지원팀,『민법강의』, 흥문사, 2011

LB엔터테인먼트,『생활법률: 한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진리탐구, 2009

현암시법전부,『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 2009

**홈페이지**

대법원 [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http://help.scourt.go.kr)

종합법률정보센터 [glaw.scourt.go.kr](http://glaw.scourt.go.kr)

국기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검찰청 [www.spo.go.kr](http://www.spo.go.kr)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서울기장법원 [www.klac.or.kr](http://www.klac.or.kr)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http://www.klac.or.kr)

한국기장법률상담소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www.legalaid.or.kr](http://www.legalaid.or.kr)

대한기장법률복지상담원 [lawqa.jinbo.net](http://lawqa.jinbo.net)

민생연대 [www.minsaeng.org](http://www.minsaeng.org)

##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3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 발행일

2012년 2월 13일

### 발행인

김성이

### 편집기획

김승규

### 자문이

이광철, 박은경, 채정아, 김연수, 안상일, 이정임

### 감수

장창국, 아주영

### 발행처

국무총리 소속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7층

### 전화

02-3704-0576

### 팩스

02-3704-0579

### 홈페이지

[www.pgcc.go.kr](http://www.pgcc.go.kr)

### 디자인

(주)디자인신지 02-548-5780

### 일러스트

강일구

### 인쇄

나라기획 02-889-1888

### 발간등록번호

11-1371045-000039-01

\*소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